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4446-01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 2023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업무 매뉴얼



농림축산식품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 목차 | CONTENTS

## 01

CHAPTER

### 제1장 정부 규제혁신 추진시스템

- 1.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 ..... 06
- 2. 규제혁신 추진전략 ..... 07

## 02

CHAPTER

### 제2장 행정규제의 개념

- 1. 행정규제의 개념 ..... 10
- 2. 행정규제의 기본원칙 ..... 13

## 03

CHAPTER

### 제3장 네거티브 규제

- 1.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 ..... 18
- 2.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 20
- 3.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유형 및 사례 ..... 22
- 4. 네거티브 규제 전환시 유의사항 ..... 25



## 2023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업무 매뉴얼

### 04

CHAPTER

#### 제4장 규제샌드박스

1. 규제샌드박스 개요	28
2. 규제샌드박스 주요제도	29
3. 주관부처별 업무처리절차	34
4. 우리부 규제샌드박스 사례	38

### 05

CHAPTER

#### 제5장 기타 규제 제도

1. 규제 일몰제	42
2. 규제영향분석	47
3. 규제 비용감축제	57

### 06

CHAPTER

#### 제6장 규제등록제도

1. 규제등록제도의 개요	70
2. 규제등록 절차(규제정보화시스템)	71
3. 법령 유형별 규제등록대상 검토 절차	72
4. 규제등록 관련 Q&A	76

### 07

CHAPTER

#### 제7장 우리부 규제혁신 사례

1. 우리부 규제혁신 사례	82
2. 타부처 발표 사례	93





# CHAPTER 01

| 제1장 |

## 정부 규제혁신 추진시스템

1.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
2. 규제혁신 추진전략

2023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업무 매뉴얼

# 1

##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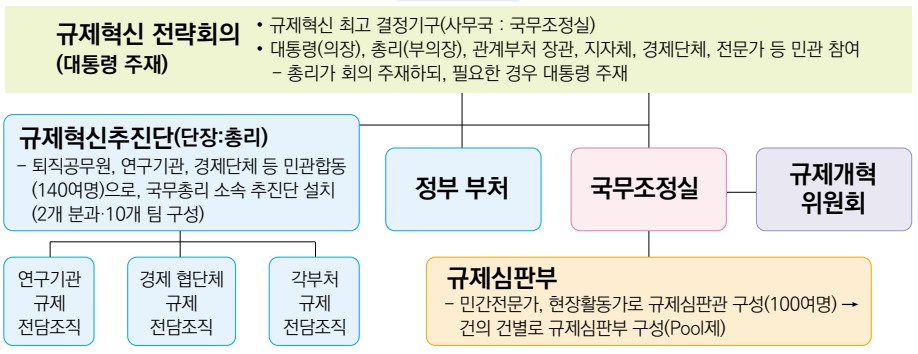
### 비전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하여,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 선도

### 추진전략

<b>덩어리규제의 전략적 개선</b> - 퇴직공무원·기업·전문가 역량 결합, 덩어리규제 집중 발굴·개선	① 과제 발굴 • 경제단체, 연구기관, 부처 등의 규제전담조직 연계, 덩어리 과제 발굴 • 가능한 한 자체 개혁하며, 기타의 경우 적절한 기관에 이송 ② 개선안 마련 • 규제혁신추진단에 이송된 덩어리 규제를 종합 검토 → 개선안 마련 ③ 개선안 확정 • 규제혁신추진단에서 해결되는 경우 종결 • 미해결 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개선방안 논의, 최종확정 ④ 집행 및 점검 • 소관부처 책임하 후속조치 이행, 규제혁신추진단은 현장 점검·보완
<b>규제심판제도</b> - 기업·국민의 현장 규제 애로를 균형적 시각에서 심판(4단계)	① 소관부처 검토 • 온라인·오프라인 청구 통해 건의접수, 폭넓은 의견수렴 진행 • 건의 수용시 규제개선안 마련 추진 ② 규제심판부 판결 • 소관부처 불수용 과제에 대해 규제심판부가 이해관계자·부처 의견수렴(소관부처가 규제 필요성 증명) 통해 검토 → 권고안 제시 ③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 • 규제심판부 권고안 불수용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권고안 의결 •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함 ④ 규제혁신 전략회의 • 규제개혁위 권고 불수용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검토, 최종 확정 • 추후 소관부처 이행, 국조실은 신속입법 지원(민관합동 이행여부 점검)
<b>과감한 신산업 규제혁신</b>	<b>규제샌드박스 플러스</b> • 이해갈등이 있는 규제는 중립적인 민간전문가 참여하에 해결방안 강구 • 심의기한(90일) 설정, 법률 개정 계획 수립 통보 의무화(실증종료 후 60일 이내) 등 신속한 규제개선 • 유사 특구 간 협의체 구성, 공동 기술개발 및 데이터 공유로 시너지 효과 창출 <b>네거티브 규제 확대</b> • 기업수요 등을 바탕으로 미래산업 등 핵심분야 선정, 관련법령 전체 정비 • 파급효과가 큰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우선 적용
<b>규제 품질관리 강화</b>	<b>규제개혁위원회 재설계</b> • 민간전문가(규제심사관) 충원을 통한 심사 역량 강화(전문성·다양성 제고) • 규제연구센터(KDI, 행정연) 역할 및 역량 강화 <b>중요규제 심사 강화</b> • 위원회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 규제 범위 확대 <b>규제비용 획기적 감축</b> • One-In, Two-Out(200%) 추진(부처별 규제비용 감축목표 설정) <b>재검토기한 의무설정</b> • 신설·강화되는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기한 설정(3년) • 재검토기한 도래시 규제영향분석 통해 규제 폐지 개선

### 추진체계



## 2 | 규제혁신 추진전략

### 가.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
- 대통령(의장)과 총리(부의장) 및 관계부처 장관, 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
-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여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 예정

### 나.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 혁파 목적
  - \* 多부처가 연관되어 중복되거나 복합된 규제(예: 비대면 의료·진료)
- 총리·민간이 단장, 퇴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
-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
-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단체 내에도 규제전담조직(규제개혁 TF)을 설치하고, 규제혁신 추진단과 연계하여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

### 다. 규제 심판제도 도입

-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하여 중립적·균형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
- 기업·국민의 규제애로 건의 사항에 대해 규제 소관 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그간의 방식 타파
- 규제심판관은 국제기준, 이해관계자·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 판단
-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

## 라.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지속 발전

### 1)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

- 기존 규제샌드박스를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로 개편하여 이해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실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

\* 심의기한 설정(90일) 및 실증 종료 후 60일 내 법령 개정계획 마련 등

### 2)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

-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원칙·방법 등을 담은 지침 마련 후, 각 부처별로 소관 법령을 전수조사하여 개편할 예정

## 마. 규제 품질관리 강화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다양성 제고 등을 통해 규제심사 및 규제영향분석 역량 강화
- 중요규제 범위 확대
-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여 규제비용 감축
  - \* 우리부는 '23년 감축 목표로 330% 할당
  - \*\* (예) 법령 개정으로 규제가 신설되어 100억원의 규제 순비용 증가 시 타법령 등의 규제 폐지·개선으로 330억원의 규제비용 감축 필요
-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기한(3년) 설정
- 재검토기한 도래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등 체계적·지속적인 사후관리



CHAPTER 02

| 제2장 |  
행정규제의 개념

1. 행정규제의 개념
2. 행정규제의 기본원칙

2023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업무 매뉴얼

# 1

## 행정규제의 개념



### 행정규제

- ❖ 행정기관(행정규제의 주체)이 국민(행정규제의 객체)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행정규제의 내용)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행정규제의 형식)된 사항
  - 행정규제의 주체·객체·내용·형식에 모두 해당할 때 행정규제로 판단
-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는 행정규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정의

## 가. 행정규제의 주체 : 행정기관

### 1) 행정 기관

- ❖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이 됨
- ❖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등
- ❖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 2) 예외

-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법 적용 제외)
  - 원칙적으로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 감사원 등은 광의의 국가개념에 포함되나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주체에서 제외(법 제3조제2항)

## 나. 행정규제의 객체 : 자연인, 법인, 사단 및 재단

### 1) 행정규제의 객체에 해당하는 자

#### ❖ 법령의 규제를 받는 자연인(내국인, 외국인)

- 국민은 자국내 사람(내국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규제대상(피규제자)인 내·외국인을 통칭

#### ❖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및 재단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에 근거해서 행하는 규제사무로 인해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당하는 피규제자라면 자연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법인격 유무에 관계없이 행정규제의 객체가 됨

### 2) 행정규제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자체 및 소속기관, 소속 임직원 등은 행정규제 대상인 국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소속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규제는 행정내부규제로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 대한 권리제한·의무부과가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를 가져오는 경우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는 국민이 행정규제의 객체가 됨

#### ❖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위임·위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행위의 주체의 지위에 있으며, 위임·위탁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범위 내에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행정규제 대상인 국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위임·위탁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행정규제는 행정내부규제로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다. 행정규제의 내용 : 행정목적의 실현

### 1) 행정규제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국민에게 “부담적이나 수익적 규정이나”가 판단기준이 아니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나”가 판단기준임

## 2) 행정규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중 그것이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 국민의 일반적인 민사, 상사생활을 규율하는 민법, 상법이나 개별 행정법령 내에 법적 명확성을 위해서 규정된 민법 혹은 상법과 동일한 정도의 규정은 '특정 행정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 \*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서 민법 혹은 상법 등의 규제수준보다 강화된 요건 등을 개별 행정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는 행정규제임.

## 3)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제외

-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중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을 제외토록한 사무
  - 범죄수사 등 형사관련 사무,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행형 및 보안처분 등에 관한 사무  
(예)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보안관찰법 등의 법령과 개별 행정법 내의 행정형벌(행정 질서벌은 제외) 규정
  -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 세율, 부과 및 징수와 직접 관련된 사항
    - \* 조세의 종목, 징수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류관련 면허, 업종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의무 등은 행정규제에 해당

## 라. 행정규제의 형식

### 1) 행정규제는 '법령 등'에 규정된 것

- ❖ '법령 등'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고시, 공고, 예규, 훈령을 지칭

### 2) '법령 등'에 규정되지 않은 규제

- ❖ 법령 등에 규정되지 않은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등록·규제심사의 대상이 되는 행정규제는 아니나,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법령 미근거 규제가 됨(법 제4조)



## 마. 행정규제의 범위

- ❖ 행정규제의 구체적 범위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어야 하는 행정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①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②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③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④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2 행정규제의 기본원칙

### 가. 규제법정주의

#### 규제법정주의

- ❖ 규제법정주의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원칙

\* 헌법 제37조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에 규정

-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제2항)
- ❖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1항)

## 1) 규제를 규정할 수 있는 '법령 등'의 범위

-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규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원칙임
- ❖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 \* 조례, 조례규칙의 경우도 헌법 제117조제1항에 의거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행정규제 기본법 및 개별법률의 근거범위 내에서 규제가 가능함
- ❖ '고시 등'에는 원칙적으로 규제를 규정할 수 없으며 법령 조례의 위임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로서 전문적, 기술적, 경미한 사항에 한해서만 정할 수 있음
- ❖ 지침, 교육자료, 지시 등에는 새로운 규제를 정할 수 없으며 해당규제의 운영·집행절차내용의 명확화 등에 관한 해석적인 사항만 정할 수 있음

## 2) 행정부관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범위

- ❖ 법령 등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이 되지않은 경우 행정부관(허가조건, 준수사항 등)만으로 과도하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음
- ❖ 법령 등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위임된 경우나 행정처분의 성질상 가능한 재량행위인 경우에도 제한적된 범위내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새로운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별개의 규제를 정할 수 없음
- ❖ 기속행위의 경우 '법령 등'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 기속행위(신고 등)에 대한 부관의 경우는, 신고와 관련된 권고적·계도적인 사항이나 신고행위와 관련되어 타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한 행정안내 등에 한하고 새로운 권리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 다만, 신고의 성질에 따라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본래 의미의 신고)의 경우에는 그것이 관계행정기관에 도달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므로 규제인 부관 등을 붙일 수 없으나, 신고가 강학상 허가등인 경우는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행정부관은 가능함

## 나. 규제의 시의성 및 불가피성

- ❖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할 만큼 현상의 문제점이 중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동 규제가 시급하게 필요하여야 함
  - 규제 도입시 기존규제의 활용가능성 또는 타법령의 유사규제 여부를 확인하여 규제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 ❖ 불가피하게 미래에 발생할 문제점을 예견한 규제를 도입시에는 그 필요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다. 규제수준의 적정성(비례의 원칙)

- ❖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규정되어야 함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전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해서는 안 됨
  - 행정편의주의 시각에서 규제목적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과도한 내용을 규정하여서는 안 됨

## 라. 규제순응의 실효성

- ❖ 규제는 일반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어야 함
  - 일반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없는 규제는 법규 위반자를 대량으로 양산하거나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음
- ❖ 사회적·기술적 여건 규제집행 일선 공무원의 현실 우리나라의 실태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함



# CHAPTER 03

## | 제3장 | 네거티브 규제

1.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
2.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3.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유형 및 사례
4. 네거티브 규제 전환시 유의사항

2023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업무 매뉴얼

# 1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



## 네거티브 규제

- ❖ 네거티브 규제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방식으로, 포지티브 규제(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에 한해서만 허용)의 반대 개념

### | 참고 | 네거티브 방식과 포지티브 방식 비교

#### 포지티브

- 원칙금지, 예외 허용
- 법령에서 허용요건 규정
- 열거된 것만 제한적 허용
- 국가의 감독·규제 위주 법체계
- 융합 등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 곤란
- 유해행위·영업의 사전규제에 초점

#### 네거티브

- 원칙허용, 예외 금지
- 법령에서 금지요건 규정
- 금지한 것 외에 모두 허용
- 민간의 자율·창의 중심
- 융합 등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
- 유해행위·영업은 사후관리를 통해 방지

#### 네거티브 규제 예시

-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0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0항에 따른 허가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0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0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없다.

## 가. 네거티브 규제의 원칙

- (우선 적용) 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경우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 (최저 국제수준)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따라 열거되는 금지사항은 최소한도로 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최저 국제수준’으로 전환하여야 함
- (명확성) 금지사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
  - \* (예시)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를 허가의 제한요건으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 (예측 가능성) 국민들이 법규를 보고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예측할 수 있어야 함
- (실효성)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함
  - \* (예시) 영업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혜택이 규제로 인한 공익 보호보다 클 것
- (합목적성)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할 때에는 기존 요건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함
  - \* 기존 요건을 그대로 차용하고 법 문안 표현만 네거티브 식으로 바꾸는 것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도입 효과를 감소시킴
  - \*\* (예시) 구체적 허가 요건을 유지한 채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를 →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외에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 지양



### 네거티브 규제 유형

- ❖ 네거티브 규제 유형은 △첫째 입법방식의 변화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구현하는 유형과 △둘째 신산업·신기술의 등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네거티브 규제 체계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는 방안으로 구분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협의의 네거티브를 포함한 사후 규제 체계로,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체계를 위한 다양한 입법 방식과 혁신제도(규제샌드박스)를 포괄



### 협의의 네거티브 규제

- ❖ 협의의 개념은 “네거티브 리스트”를 의미하며, 금지사항을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사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법령 서술 방식
  - \*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금지사항을 열거하는 방식(네거티브 리스트)으로만 정의하면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규제유형은 매우 제한적



## 1 유연한 입법방식

-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유용성 극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서 벗어나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 재정립 필요
  - 협의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인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외에도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제품 및 서비스 분류 △사후 평가·관리 등 유연한 입법방식 도입 필요

## 2 규제샌드박스(혁신 제도, 제4장에서 후술)

- **(개념)**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을 대상으로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조건하 규제를 일부 면제, 유예하여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
  - 혁신 사업자가 기존 규제 부담 없이, 한정된 소비자·지역 대상 테스트 가능
- **(목적)**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기간·규모 등이 제한된 시장 환경에서 시범사업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신산업·신기술의 활성화 지원
- **(기대효과)** 기존 규제와 충돌하거나 인증 기준 등 규제가 없어 시장 출시가 막힌 혁신 신서비스·제품의 안정성 및 사업성 검증

###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탄력적용) 신사업을 테스트(시범사업) 하도록 하는 것,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 시도

### 3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유형 및 사례

### 1 포괄적 개념 정의

※ 인허가 대상(사업, 제품·시설, 시설·장비의 재료(소재)의 범위·종류) 또는 지원대상(업종 범위, 기업, 사람)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

- ☞ (방법) ① 개념 자체를 광범위하게 규정 (개념 a → 개념 A)  
② 개념속 종류·범위를 확대 (개념 A = a, b, c +d)

① 기존 법령에 **요건과 기준이 과도하게 한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규정은 **개념의 범위 확장**(개념 a → 개념 A)

#### ●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가 범위 확대

**기존** 양봉, 양잠 외 곤충사육자는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없음

**개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타 곤충농가가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방안 마련

####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한 농업인 자격요건 네거티브화

**기존** 농업인 자격을 포지티브로 규정

**개선** 직장인을 제외하고 폭넓게 농업인으로 인정

\* 국민연금법의 사업장 가입자와 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농업인으로 인정

② **개념 정의에 일부 품목을 나열하고** 있는 규정은 관련 신산업 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 (개념 A = a, b, c +d)

#### ● 농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기존** 골판지, 폴리에틸렌(PE)대 등 7종류로 규정

**개선**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신소재까지 확대

## ● 농업재해의 범위 확대

**기존** 현행법상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등을 농업재해로 규정

**개선** '황사' 추가

## ● 간척지 조성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허용 용도 확대

**기존** 단년생 작물 경작, 농업기술 관련 시험·연구용 경작, 향토문화 축제에 한정

**개선** '문화관광 관련 조형물, 산책로, 간이 휴게시설 등' 을 추가

## 2 유연한 분류체계

※ 한정적으로 나열된 인허가 유형 또는 지원 유형에 새로운·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혁신) 카테고리를 신설

☞ (방법) ① 단순 혁신카테고리

② 000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유형을 허용

③ 동등 이상의 효과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경우 허용

④ △△의 장이 일정조건하에 지정하는 대상을 허용

## ● 가축시설 소독방법 다양화

**기존** 가축시설의 소독방법을 소독약품의 종류별·대상별 열거

**개선**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새로운 소독방법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 허용

## ●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 입주조건 변경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만 글로벌식품존 부지에 입주 가능

**개선** 국내기업도 해당 부지에 입주 가능하도록 입주조건 변경

### 3 네거티브 리스트

※ 허용대상을 한정 열거(포지티브 리스트)하는 방식 → 금지 대상만 열거(네거티브 리스트)하고 나머지는 허용

\* 금지사항을 나열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 허용, 금지대상의 유형은 특정한 행위·물품·특정사업·활동영역 등 다양

- ☞ (방법) ① 허용대상 열거 삭제 (→모두 허용)  
② 허용대상 열거 → 안전, 공공질서 등을 저해하는 대상을 제외(금지)하고 모두 허용  
③ 전면 금지 → 일정조건(장소·목적)하 허용  
④ 모든 대상에 의무이행 부가 → 의무이행 대상을 한정(의무대상리스트), 나머지는 의무경감·면제

#### ● 유통·판매가 가능한 곤충 규격 네거티브 전환

**기존** 유통·판매가 가능한 곤충 규격 규정(포지티브)

**개선**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곤충의 규격만 규정하고 모두 허용

### 4 사후 평가·관리

※ 사전 심의·검사 의무를 면제·완화하고 자율심의, 사후 평가·관리를 도입하여 신속한 시장 출시 지원

- ☞ (방법) ① 심사 의무화 → 자율심의(또는 생략) + 사후 관리  
② 사전 구비 → 사후 적정성 검사  
③ 허가제 → 등록제 + 사후 책임 부여  
④ 부분별 허가요건 준수 검사 → 전체 총량 평가

#### ● 농약 재등록 제도 개선

**기존** 농약 제조업자는 농약 재등록시 별도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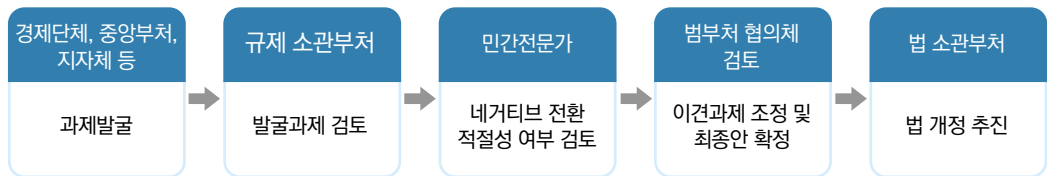
**개선** 재등록시 자체 검사성적서로 대체, 적합성 검토후 재등록



### 네거티브 규제전환시 고려할 점

- ① 네거티브 전환을 위해 발굴한 규제의 내용이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인지 확인
- ② 해당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시 함께 적용하여야 하는 기존 법령이 있는지 검토
- ③ 네거티브 전환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효과 및 부작용 없는지 점검
- ④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 시장 모니터링과 제재 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절차 ●●



#### 1) 네거티브 규제 도입 목적 확인

-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거나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기반인지 확인
- 따라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첫 번째 절차는 각 부처의 소관 법령중에서 시장의 자유로운 진입과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며, 그 다음 단계로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활용하여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임

#### 2) 연관 규제 일괄 정비

-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실효성 제고와 기존 법체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동시에 전환이 필요한 법령이 있는지 점검

\* (예)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 검토 필요

### 3) 네거티브 전환 효과 검토

-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예상되는 신시장 창출 및 신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경제적·사회적 효과 도출
- 네거티브 규제전환 도입 시 국민의 생명·안전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지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참여한 이해 상층 및 가치 총돌로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는 공론화 절차 마련 등 해결 방안 모색

### 4) 사후 시장 모니터링 및 제재 체계 구축

- 사전규제방식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면 새로운 방식의 기술과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어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규제 당국은 어떤 결과가 발생할 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
- 따라서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전 규제 방식에 의해 시장을 관리해 오던 관성을 제거하고 네거티브 방식에 맞는 사후 시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고려 필요
- 정부 주도의 시장 모니터링은 완벽하게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민간부문과 협업 고려
-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성공을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전환에 따라 확대된 자율성을 피규제자(국민과 기업)가 오용·남용하지 않고 스스로 공정한 원칙을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 예컨대 피규제자의 자율성 오·남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피규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CHAPTER 04

| 제4장 |  
규제샌드박스

1. 규제샌드박스 개요
2. 규제샌드박스 주요제도
3. 주관부처별 업무처리절차
4. 우리부 규제샌드박스 사례

2023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업무 매뉴얼

# 1 규제샌드박스 개요

## 가. 추진 배경

- AI,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新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 가속화** 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
  - \*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맞는 인증·허가 기준이 부재하거나, 기존 법령 적용이 곤란하여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사례 발생

## 나. 개념 및 법적근거

- ❖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조건 하(시간·장소·규모)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 주는 혁신의 실험장**
- ❖ (법적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 개별 6법에 근거해 운영**
  -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기본법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19.7.17 시행)
    - 先허용·後규제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제시
  -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지역혁신 등 6대 분야별 법령 제·개정
- ❖ (추진 체계) **국무조정실(총괄) 중심 각 분야별 주관부처(5개) 협업체제로 운영**
  - (주관부처) 소관 법률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을 토대로 제도 운영중**
    - 부처간 이견이 있는 쟁점과제는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주관)를 통해 점검·조정
    - 각 부처는 민관합동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위원장: 주관부처 장관)를 운영하며 규제샌드박스 관련 사항 심의·의결
      - \* 규제자유특구 분야는 추가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상위 위원회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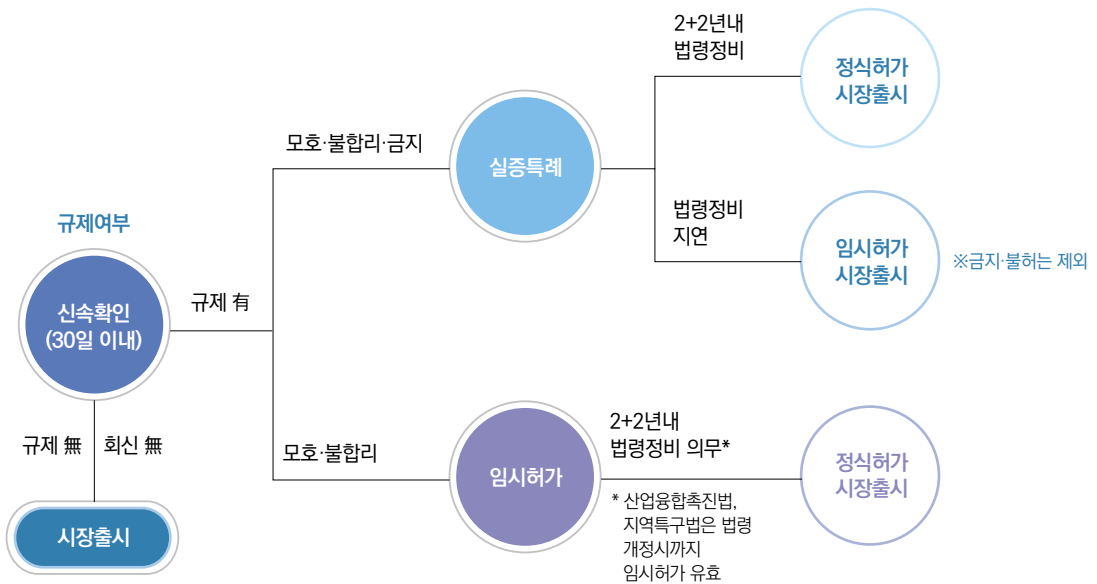


## ● ● 규제샌드박스 운영체제도 ● ●



## 2 규제샌드박스 주요제도

### | 규제샌드박스 운영 절차 |



※ 실증특례를 중심으로 입시허가와 신속확인 제도를 연계하여 운영중

## 1) 실증특례

### 가) 정의

-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
-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 내 실증 테스트 허용
- 이후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 추진

### 나) 실증특례 신청

- ※ ①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 기준·규격·요건이 법령에 없는 경우, 既 존재하는 기준·요건 적용이 곤란한 경우, ②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제한된 구역·기간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실증특례 신청

#### ●● 규제 실증특례 신청절차 ●●

- ① 시범사업 신청(사업자 → 소관부처)
- ② 소관부처는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민관합동)에 상정
- ③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특례 여부 및 범위(구역·기간·규모) 심의·조정
- ④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특례 부여

### 다) 실증특례 결정

- 규제특례심의위원회(민관합동)에서 해당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안전성, 시험·검증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례 여부 의결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환경 및 개인정보의 보호,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함(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 제6항)
- 규제특례 기간은 **2년 이내**에서 정함(1회 연장 가능),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라) 손해배상

- 실증특례를 받은 융합 신제품·서비스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 제2항)
- 규제특례심의회에서 **손해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여부 심의**(법 제10조의3 제6항)
- 규제특례를 부여 받은 융합 신제품·서비스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단,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는 책임면제

## 마) 규제개선

- 관계 행정기관은 규제특례 결과를 통해 법령 정비 필요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법령 개정**에 착수해야 함
- 규제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법 제10조의4 제5항)

## 2) 임시허가

### 가) 정의

-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해 임시(2년 이내)로 허가(1회 연장 가능)를 부여하는 제도
  - \* 실증 특례(시험·검증 목적) ↔ 임시허가(시장출시 목적)
-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관계 당국은 관련 규제를 개선

### 나) 임시허가 신청절차

- ※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 **기준·규격·요건이 법령에 없는 경우**, 既 존재하는 기준·요건 **적용이 곤란한 경우** 임시허가 신청

## ●● 임시허가 신청절차 ●●

- ① 임시허가 신청(사업자 → 소관부처)
- ② 소관부처는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민관합동)에 상정
- ③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 여부 심의·조정
- ④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임시허가

### 다) 임시허가 결정

- 규제특례심의위원회(민관합동)에서 해당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 의결
-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여 시험·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법 제10조의6 제6항)
- 임시허가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 연장\*** 가능(법 제10조의6 제9항)
  - \* 법령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

### 라) 손해배상

- 임시허가 받은 융합 신제품·서비스로 인한 **안전사고 및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법 제10조의6 제2항)
-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손해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 심의**(법 제10조의6 제6항)
- 규제특례를 부여 받은 융합 신제품·서비스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단,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는 책임면제

### 마) 규제 개선

- 소관기관은 임시허가 받은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함(법 제10조의6 제12항)
- 허가 근거가 마련된 경우 임시허가 받은 사업자는 즉시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10조의6 14항)

### 3) 신속확인

#### 가) 정의

-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허가 필요 여부 및 허가 기준·요건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제도
  -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이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규제부처가 30일 이내에 규제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 최소화
  - 특히, 규제부처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 ※ 사업자 등이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존재, 허가 필요여부 등을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장관에게 확인 요청**

#### | 참고 | 규제특례 추진시, 국민의 생명·안전 우려, 환경 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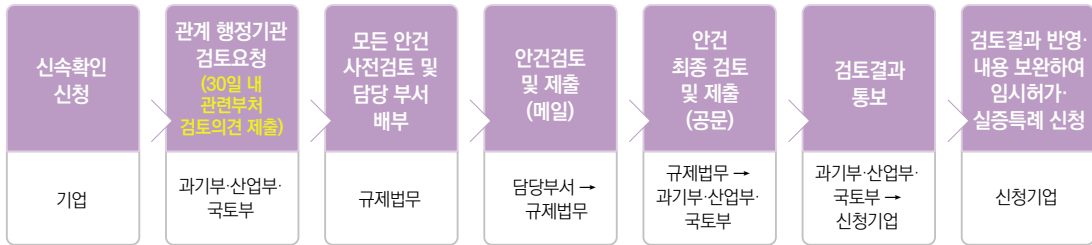
- ① (생명·안전 검토)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우려시 규제특례 제한
- ② (문제 즉시 대응) 규제특례 적용 중 문제 발생·예상시 특례 취소
- ③ (배상책임 강화)사전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피해자 → 사업자)

### 3

## 주관부처별 업무처리절차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통상자원부 &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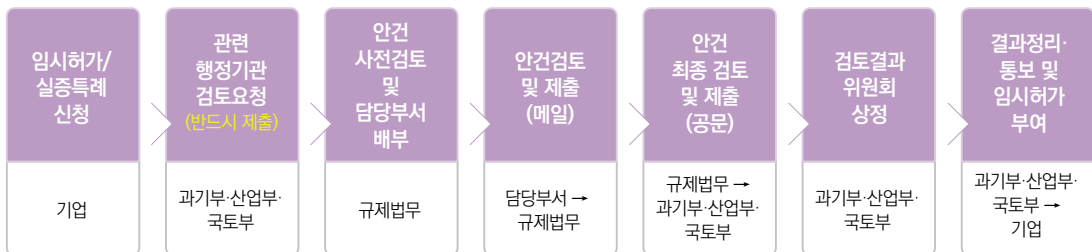
#### ●● 신속확인 신청절차 ●●



#### ●● 농식품부 소관 규제 샌드박스 신속확인 신청 사례 ●●

- ① 반려동물 안심입양 플랫폼(피터펫)
- ②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차(경동개발)
- ③ 반려동물 공유미용 플랫폼 서비스(씨앤엘하이크)
- ④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상담 등 건강관리 서비스(핏펫)
- ⑤ Si기반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이아이포펫)
  - ☞ 신속확인 절차 후, 과기부 특례심의위를 거쳐 실증특례 부여('23.6월)
- ⑥ Si융합 반려동물 1:1 맞춤 영양제 구독서비스(퍼펫)
  - ☞ 신속확인 절차 후, 산업부 특례심의위를 거쳐 실증특례 부여('23.7월)

#### ●●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신청절차 ●●



\* 전문위원회(주관부처 실장 주재) : 상정 안전 담당 국장 참석

\*\* 심의위원회(주관부처 장관 주재) : 농식품부 차관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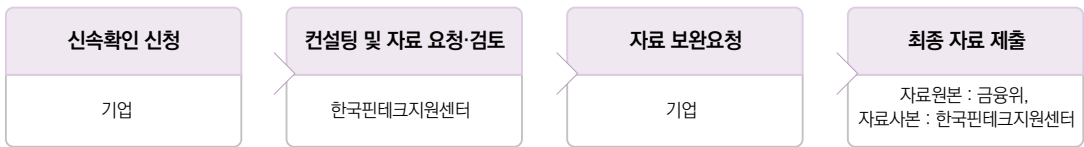
## 2 중소벤처기업부

### ● ● 규제자유특구 샌드박스 신청 절차 ● ●



## 3 금융위원회

### ● ● 금융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 ● ●



## 4 신청 및 심의절차

### 가) 사전컨설팅

- 규제샌드박스 접수 전담기관은 기업 요청시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법률 자문, 신청서류 작성 등을 지원

### 나) 신청

- 컨설팅 후 분야별 전담기관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에 특례 신청
- ※ 2020년 5월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기업은 기존의 분야별 전담기관은 물론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신청·접수 가능

### 다) 심의

- 전문 분과위에서 관계부처와의 쟁점 협의·조정 후,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의결
- 위원회는 신청 사업의 혁신성, 이용자의 편익과 더불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도 함께 심의하여 특례 부여 여부 결정





## 라) 분야별 문의처

<p>(총괄)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홈페이지 : <a href="http://www.sandbox.go.kr">www.sandbox.go.kr</a></li> <li>- 전부처 샌드박스 현황 등 소개</li> </ul>	<p>(총괄)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홈페이지 : <a href="http://sandbox.korcham.net">sandbox.korcham.net</a></li> </ul>
<p>(과기부) ICT 규제샌드박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홈페이지 : <a href="http://sandbox.or.kr">sandbox.or.kr</a></li> <li>전화번호 : 043-931-1000</li> </ul>	<p>(산업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홈페이지 : <a href="http://sandbox.kiat.or.kr">sandbox.kiat.or.kr</a></li> <li>전화번호 : 02-6009-4088, 4089</li> </ul>
<p>(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샌드박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홈페이지 : <a href="http://rfz.go.kr">rfz.go.kr</a></li> <li>전화번호 : 044-204-7211</li> </ul>	<p>(금융위) 금융규제 규제샌드박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홈페이지 : <a href="http://sandbox.fintech.or.kr">sandbox.fintech.or.kr</a></li> <li>전화번호 : 02-6375-1523</li> </ul>
<p>(국토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홈페이지 : <a href="http://smartcity.kaia.re.kr">smartcity.kaia.re.kr</a></li> <li>전화번호 : 031-389-6555</li> </ul>	<p>(과기부)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홈페이지 : <a href="http://www.innopolis.or.kr">www.innopolis.or.kr</a></li> <li>전화번호 : 042-865-8800</li> </ul>

## 4

## 우리부 규제샌드박스 사례

업체명(내용)	주요 내용	승인시기
① 다자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요) 농어촌지역 빈집활용 관광숙박업 육성</li> <li>• (사업내용) 농어촌지역 빈집을 장기 임대하여 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통해 여행객에게 숙박서비스 제공</li> <li>• (기대효과) 농어촌의 일자리 확대 및 신규시장 창출, 숙박업 플랫폼 다양화</li> </ul>	'20.9월
② 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요)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li> <li>• (사업내용) 반려동물의 특성(종, 성별, 몸무게 등)에 따른 맞춤형 사료(펫푸드)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li> <li>• (기대효과) 반려동물의 특성에 맞는 안전하고 건강한 펫푸드 이용 및 관련 신산업 창출</li> </ul>	'21.5월
③ 블록펫 ④ 페이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요)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li> <li>• (사업내용) 모바일 앱을 통해 반려견의 안면영상을 촬영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을 통해 반려견을 인식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반려견 정보 취합·관리 시스템)에 등록</li> <li>• (기대효과) 동물등록과정을 간소화하여 등록을 제고, 동물등록비용 감소, 동물 구조·보호 비용 절감</li> </ul>	③ '21.5월 ④ '21.12월
⑤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 (주)에스티 등 4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요) 농업용 동력 운반차의 적재정량 검증기준 완화</li> <li>• (사업내용) ① 농업용 동력운반차 2인승 허용 및 최소 적재정량 제한 완화(200kg → 100kg), ②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연속운전 시험 기준 완화(3시간 이상, 25km → 2시간 이상, 17km)</li> <li>* 데이터 보강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의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농업용 동력운반차 실증특례 연장('21.8.9.~'23.8.8.)</li> <li>• (기대효과) 농업기계 신기술·신산업 육성에 기여</li> </ul>	'19.8월, '21.8월
⑥ (주)대륜엔지니어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요)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농업용 전동 고소작업차</li> <li>• (사업내용)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하여 만든 배터리팩을 장착한 농업 전동 고소작업차 운영으로, 동력원으로써 배터리팩의 성능 안전성 검증</li> <li>• (기대효과) 농업기계 신기술·신산업 육성에 기여</li> </ul>	'21.11월
⑦ 펫콤 ⑧ 젠들펫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li> <li>• (사업내용) 반려동물 가구를 방문해 장례(염습, 추모 등) 진행 후, 정해진 지역(펫콤: 안산/젠들펫: 문경)에서 차량 내 화장로를 통해 유해를 소각하는 서비스</li> <li>• (기대효과) 반려동물 장례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서비스 접근성 제고</li> </ul>	'22.4월

업체명(내용)	주요 내용	승인시기
<p>⑨ 아이싸이랩 ⑩ 펫스니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요) 비문(Nose Print)인식 기반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li> <li>• (사업내용) 모바일 앱(아이싸이랩) 또는 비문인식장비(펫스니즈)를 통해 반려동물의 비문을 촬영하고, 비문 패턴의 특징적 요소가 반영된 비문ID를 생성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li> <li>• (기대효과) ① 동물등록 과정 간소화를 통한 등록률 제고, ② 이용자의 동물등록비용 감소, ③ 동물 구조·보호 비용 절감, ④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반려동물 산업 동반 성장 등</li> </ul>	<p>⑨ '22.9월 ⑩ '22.11월</p>
<p>⑪ 카카오 모빌리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요) 렌터카 기반 반려동물 운송서비스</li> <li>• (사업내용) 플랫폼을 통해 드라이버와 렌터카를 매칭하여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 제공</li> <li>* 기존 승인업체인 '나투스핀'을 영입양수('21.1)하여 재신청</li> <li>• (기대효과) 소비자 이용 편의성 개선과 일자리 확대 및 신규 시장 창출</li> </ul>	<p>'23.3월</p>
<p>⑫ 에이아이포펫</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요) 시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li> <li>• (사업내용) 수의사가 시기반 스마트폰 앱*으로 촬영한 반려동물의 눈 사진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진료 및 상담하는 서비스</li> <li>* '22, '23 CES 혁신상 수상제품(티티케어)</li> <li>• (기대효과)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통한 편의성 검증 및 병 조기발견 및 예방효과로 동물병원 치료비 절감 효과</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국조실 국정과제)로 진행된 1호 과제 - 이해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b>협의회(수의사회 참여)를 구성하여, 실증을 계획·실시·관리</b>하고 데이터를 토대로 재논의하는 방식</p> </div>	<p>'23.6월</p>
<p>⑬ 퍼펫</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요) 반려동물 맞춤식 영양제 구독서비스</li> <li>• (사업내용) 반려동물의 건강정보를 분석하여 필요한 영양제를 맞춤식으로 소분·배분하여 배송하는 서비스</li> <li>• (기대효과) 증가하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수요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관련 산업의 확장 및 동물 대상 맞춤 영양제 시장의 선도 약할 기대</li> </ul>	<p>'23.7월</p>
<p>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li> <li>• (사업내용) 오프라인 도매시장과는 별개로, 거래장소의 제한없이 도매 판매자*와 구매자**의 범위 확대</li> <li>* 도매시장법인, 산지APC, 공판장, 시장도매인 등</li> <li>** 중도매인,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식자재업체 등</li> <li>• (기대효과) 오프라인 도매시장 대비 시설투자 및 유지비용 축소로 정부재 절감, 수수료·물류비·거래비용 등 절감 등</li> </ul>	<p>'23.9월</p>



# CHAPTER 05

## | 제5장 | 기타 규제 제도

1. 규제 일몰제
2. 규제영향분석
3. 규제 비용감축제

2023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업무 매뉴얼

# 1

## 규제 일몰제

### 가. 개요

-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고시 등)상 행정규제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폐지·개선함으로써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
- 분류 : 효력상실형 / 재검토행
- 효력상실형 : 규제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해당 규제가 폐지되게 하는 것
- 재검토행 :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폐지, 개선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

<b>효력 상실형 일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결하려는 문제가 한시적이거나 규제효과가 일시적인 경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한 문제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규제</li> <li>- 선진국에 없는 우리나라 특수성에 의한 고유규제</li> <li>- 행정여건에 맞지 않거나 규제의 준수도가 저조한 규제</li> </ul> </li> </ul> <p>〈예시〉</p> <p>제8조(유효기간) ①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	---

<b>재검토행 일몰</b>  * 우리부 대부분 일몰규제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변하는 환경, 신기술 관련 등 불확실하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여 주기적인 규제 재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위기상황, 공공적 압력에 의해 충분한 비용편익분석 없이 서둘러 도입된 규제</li> <li>- 정보 등이 불완전하나 예방적 차원에서 도입된 규제</li> <li>- 신기술 관련 규제, 행정환경이 급변하는 규제</li> <li>- 통계치, 사회적 인식 등 가변적 판단기준을 근거로 한 규제</li> <li>- 행정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한 행정적 규제</li> </ul> </li> </ul> <p>〈예시〉</p> <p>제2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	---

## 나. 적용원칙과 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계속적으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일몰을 설정해야 함
- 특히,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등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거나 피규제자의 준수비용 등 부담이 큰 규제, 융복합·신산업 관련 기술발전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규제는 반드시 일몰을 설정
- 단,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규제 조항은 일몰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 ● ● 일몰 적용 예외 조항 ● ●

-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규제
  -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규제
  - 국가의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등 일몰 설정시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저해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
  - 외환·금융시스템 위험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경쟁을 촉진하는 규범
  - 수수료,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등 규제
  - 국민과 기업에 규제비용 부담이 적어 규제순비용의 검증과정에서 간편심사가 적용되는 규제
  -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 당해 제도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 규제
- \* 예 : 대기오염총량제(「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 16조」에서 매 5년마다 사업장별 오염물질 재할당, 매 10년마다 할당기준 재설정 규정)
- 기타 존속시켜야 할 사유가 명백하거나 규제 재검토의 여지가 없어 일몰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규제 등

## 다. 신설·강화 규제의 일몰 적용방법

-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규제인지를 검토하여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반드시 일몰을 설정하여야 함

- 시장진입 등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인가?
- 피규제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규제 비용이 크거나(예: 10억 이상) 간접적인 규제부담이 상당한(예: 규제영향비용 100억 이상) 규제인가?
- 융복합·신산업, 신기술, 각종 표준 등 급격한 환경변화와 관련된 규제인가?

- 위 조건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규제의 목적·내용 등을 고려하여 일몰 설정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일몰을 설정키로 결정한 규제는 일몰 유형(효력상실형/재검토행) 선택

- 부처 자체 규제심사 및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후, 법령 개정 작업 추진

## 라. 일몰조항의 관리

- 각 부처는 규제일몰 설정 시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등 개별 규제의 운영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각 부처는 개별 규제의 일몰 설정 시 이에 관한 정보를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여, 일몰 정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매년 소관 일몰규제 도래 현황 등을 파악,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일몰 규제 관리

- 위원회는 각 부처의 일몰 관리계획 등을 검토, 필요시 개선의견 제시 가능

## 마. 일몰조항의 심사 및 재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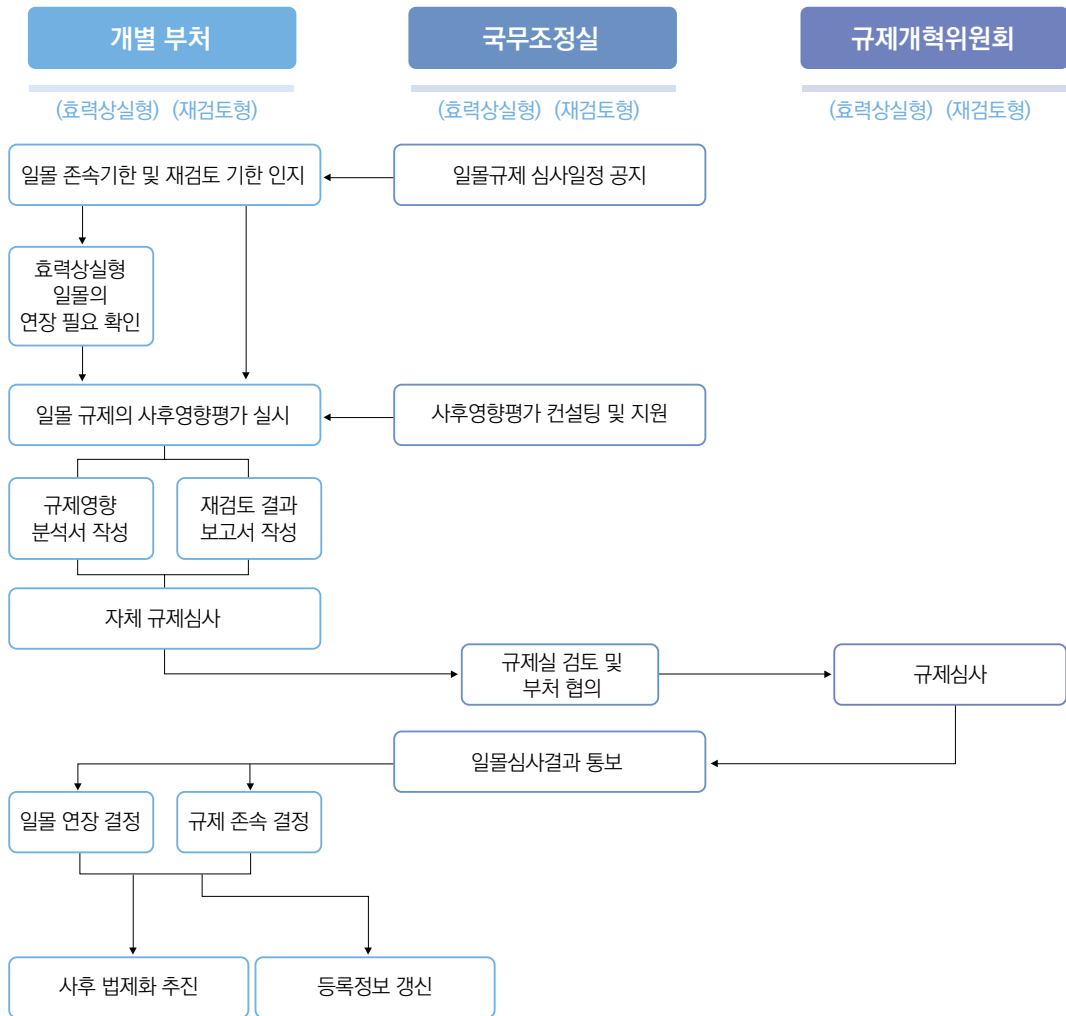
- 효력상실형 일몰 규제는 해당 조항의 존속기한이 도래할 경우 자동적으로 효력 상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규제 존속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규제심사를 거쳐 해당 규제의 존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효력 상실시, 별도의 입법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추후 별도의 법령 정비 과정에서 해당 조문의 폐지 등을 추진

- 재검토행 일몰 규제는 해당 조항의 재검토키한 도래 시, 규제의 시행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규제의 폐지 여부, 개선방향 등을 결정



● ● 심사 및 재검토 절차 흐름도 ● ●



Ⅱ 재검토형 심사절차

① 각 부처는 재검토형 일몰 규제의 기한 도래시 해당 규제의 운영성과 분석을 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재검토 결과보고서\*를 작성

\* 재검토 결과보고서는 규제 및 일몰조항의 존속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규제운용 실적·성과, 문제점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중심으로 작성

② 재검토형 일몰의 경우, 규제 문제의 지속 여부·집행성과 등을 토대로 규제 존속 필요성을 결정하고, 존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제 집행과정상 문제점,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개선토록 하고, 규제내용 및 정책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몰 기한 재설정

- ③ 각 부처 자체규제개혁위원회 및 위원회(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재검토 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위 심사기준 등을 참고하여 규제의 폐지·개선 여부, 일몰조항의 연장 여부 등을 결정
- ④ 이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별 규제의 영구적인 존속이 필요하는 등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 설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일몰조항을 해제할 수 있음
- ⑤ 각 부처는 일몰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일몰 기한 도래 전 해당 법령에 대한 후속 입법 절차를 추진
  - \* 위원회는 각 부처의 일몰 도래 규제 입법 조치 현황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조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권고 가능
- ⑥ 재검토행 일몰 규제는 심사 결과에 따라 규제폐지 / 규제개선·일몰연장 / 규제개선·일몰해제 / 규제존속·일몰연장 / 규제존속·일몰해제 등의 조치
- ⑦ 심사결과, 규제의 존속 필요성이 입증되지 못한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하되, 후속 입법 조치를 즉시 진행
- ⑧ 심사결과, 규제의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부처는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개선권고 취지에 맞게 규제 내용을 수정하여 입법절차 조속히 완료
- ⑨ 심사결과, 규제를 존속하되 일몰을 연장 또는 해제하기로 한 경우에도 이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 개정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해야 함

● ● 일몰규제의 재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항목 ● ●

항목	작성내용
<b>규제환경 변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설정 당시와 달라진 규제환경의 파악</li> </ul>
<b>규제집행 성과 분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성과평가 관점에서의 규제집행실적 제시</li> <li>• 효력상실형 일몰규제에 비해 완화된 성과분석 적용</li> </ul>
<b>이해관계자 의견수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li> </ul>
<b>부처 검토의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친 이후 부처 검토의견을 최종 작성</li> <li>• 규제폐지, 규제개선, 규제존속 중 선택</li> </ul>

### 가.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담당자가 제기된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 및 비규제 대안을 비교·검토하고, 대안이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함으로써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규제의사결정 수단임



#### 참고: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치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모든 신설·강화 행정규제**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함(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 나. 규제영향분석의 법적 근거

-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8.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9.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 ①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다. 규제영향분석서의 활용

### 1) 이해관계자별 규제영향분석서 활용

#### (1) 규제자(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해당 규제와 관련된 문제와 목표를 정확히 정의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예방하고 최적의 정책대안을 선택

#### (2) 피규제자(주요 영향집단) 및 일반 국민

-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주요내용과 영향,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획득하고, 의견수렴 과정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안함으로써 규제관련 입법 및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 2) 규제영향분석서를 활용한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신설·강화 규제심사 시 규제영향분석서상의 작성항목들이 충실히 검토되고 분석되었는지 점검하여 심사
- 규제의 신설·강화가 꼭 필요한지, 그 내용은 적정한지 등 규제심사 과정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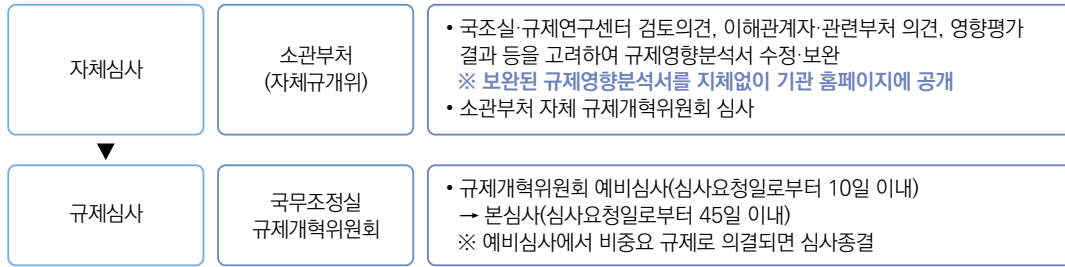
### 3) 규제비용감축제\* 운영에 활용

- 규제 신설·강화시 발생하는 규제순비용을 기존규제의 폐지·완화를 통해 상쇄하도록 관리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제2조)
  -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 피규제자(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을 산정하고, 이를 연간균등순비용으로 환산하여 적립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 부담을 부과하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해당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Cost-In, Cost-Out)

## 라. 규제심사 절차 및 규제영향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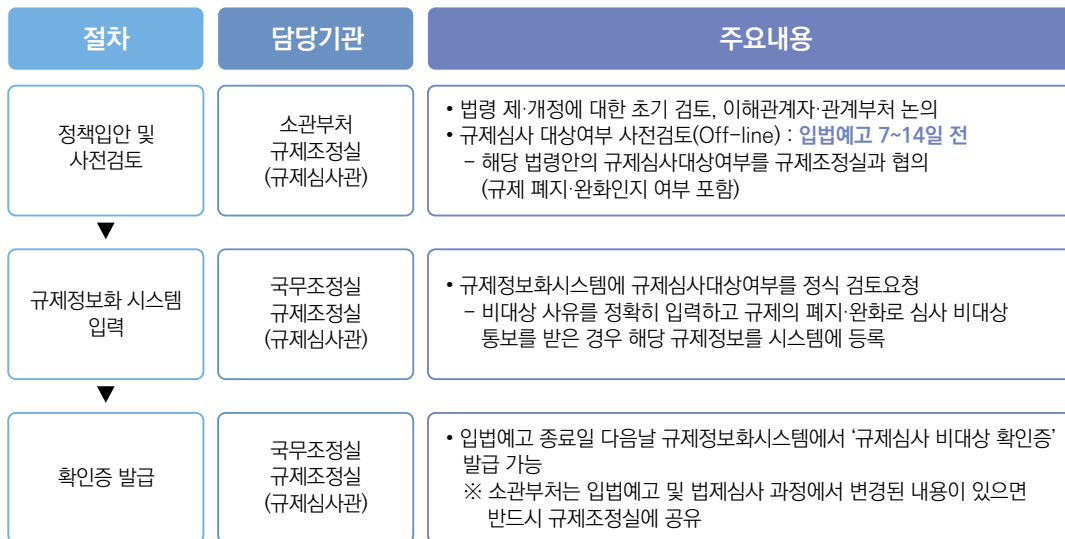
### ● ● 규제심사 흐름도 ① 규제심사대상인 경우 ● ●

절차	담당기관	주요내용
정책입안 및 사전검토	소관부처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제·개정에 대한 초기 검토,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논의</li> <li>•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Off-line) : <b>입법예고 7~14일 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법령안의 규제심사대상여부, 규제조건 및 규제영향분석서 유형(표준/간이)을 규제조정실과 협의</li> </ul> </li> </ul>
영향분석서 작성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협의된 내용으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li> <li>※ e규제영향분석 시스템 통해 작성하고 중소기업 영향분석은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매뉴얼 활용</li> </ul>
규제심사 대상여부 등 결정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정보화시스템에 규제심사대상여부를 정식 검토요청</li> <li>- 규제영향분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부실한 작성 등 <b>부적절한 규제영향분석서는 반려될 수 있음</b></li> </ul>
입법(행정)예고 (20~60일)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개정안과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입법(행정)예고(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2항)</li> <li>※ WTO TBT 통보대상 기술규제의 경우 60일 이상 예고해야하므로 기술규제가 있는 경우 자체 검토(부록3)</li> </ul>
비용검증 및 중기·경쟁·기술 영향평가 (20~60일, 입법예고와 동시진행)	규제연구센터 (비용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영향분석서 내 비용분석에 대한 규제연구센터 검증</li> <li>※ 비용 편익 분석 사항 수정·보완(소관부처)</li> <li>※ 검증결과에 따라 비용감축제 적용여부 확정</li> </ul>
	비용분석위원회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용상 중요규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호) 중 자문이 필요한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종결</li> <li>※ 위원회 자문의견은 예비심사 때까지 검토하여 보완</li> </ul>
검증의견 종합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연구센터 검증의견 및 분야별 영향평가 의견 등 종합</li> </ul>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안은 행정예고(20일간) 및 법제처 검토를 규개위예비심사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 규제심사 이후 법령안 내용이 변경시 규제심사대상 여부 등에 대해 반드시 규제실과 재협의

## ● ● 규제심사 흐름도 ② 규제심사비대상인 경우 ● ●



### 1) 정책입안 단계

#### ① 규제심사 사전 검토 의뢰(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해당법령이 규제적속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에 사전 검토의뢰
- \* 사전규제검토서(규제 신설·강화/폐지·완화/규제심사비대상), 법령안, 방침문서(결재본) 등을 규제심사관에게 송부(메일 등)
- 행정규칙 포함 모든 법령안에 대해 제출 필요, 규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규제심사관리관실로부터 규제 비대상 확인 필요

## ② 규제심사 대상 여부 사전검토(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 규제조정실에서는 의뢰받은 제·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대상여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유형(표준/간이형)을 부처에 안내(Off-line)
- \* 법 제33조제2항(규제심사 적용제외)에 해당되거나 제23조제1항제1호(행정규제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규제심사 비대상,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불필요

### ● ● 규제심사 대상 판정시 간이형과 표준형 구분 ● ●

구분	기준
간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li> <li>• 상위법 위임에 따른 경미한 사항</li> <li>• 의무제출 서류내용의 구체화</li> <li>• 수익적 행정처분의 절차관련 규제</li> <li>• 계량적인 비용·편익이 불가능한 사항</li> </ul>
표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이형을 제외한 모든 규제</li> </ul>

## 2)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단계 - 입법예고 7일 전까지

### ① 규제심사 대상일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중앙행정기관)

- 규제심사관리관실에서 결정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유형(표준/간이형)에 따라 e-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을 통해 작성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작성하고, 소관 실·국장, 과장·담당관 등을 명기, 국장 서명(규제실명제)
- 신설·강화 규제에 대하여 평가요소를 중심으로 정량적·정성적 분석 실시(비용·편익분석 포함)
  - \*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규제영향분석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규제영향집단)와의 소통 강화
- 규제영향분석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나 연구기관 등을 적극 활용
- 중소기업 영향분석(차등화 방안 마련 포함) 시에는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매뉴얼'을 활용하여 심도 있게 분석(규제 차등화 예비분석결과표 작성)
  - \* 법 제8조의2(2018. 10. 18. 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설·강화되는규제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의 제·개정을 수반하는 법령의 입법예고또는 고시 등의 수립·시행 또는 변경을 위한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WTO TBT 협정에 따라 WTO 통보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

\*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8조

### ③ 규제정보화시스템으로 규제심사대상여부 검토요청(중앙행정기관)

- 규제심사 대상: 규제영향분석서\*, 사전규제검토서, 입법예고문(법령안), 방침문서 등 첨부하여 요청

\* e규제영향분석시스템에서 작성한 영향분석서를 업로드

- 규제심사 비대상: 사전규제검토서, 입법예고문(법령안), 방침문서 등 첨부

\* 규제 폐지·완화인 경우, 피규제 기업·소상공인에게 발생하는 편익을 분석하여 비용감축제 적립(Banking) 반영 (비용분석 후 규제연구센터 검증 필요)

## 3) 규제정보화시스템 입력 및 영향평가 송부 단계

### ① 규제심사 대상여부 승인(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 입법예고전

- 규제조정실에서는 부처에서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규제정보 및 영향분석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 후 심사대상 여부 확정\*

- 해당 절차를 통해 규제심사 대상여부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유형(표준형/간이형)이 최종확정

\* 표준형 규제영향분석서로 작성된 규제사무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업무처리 지침」 제2조제3항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모두 규제비용감축제 대상 → 비용감축제 대상여부는 비용 검증 후 최종확정

### ● ● 적용제외 사유 ● ●

- ①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규제
- ②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규제
- ③ 국가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제
- ④ 금융·외환시스템 위험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 ⑤ 수수료,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등 규제비용의 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한 규제
- ⑥ 1년 이하의 존속기간이 설정된 규제



## ② 규제영향평가 검토(영향평가 담당기관)

- 규제조정실의 규제심사 대상 확정시 기술영향평가(국가기술표준원), 경쟁영향평가(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영향평가(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정보화시스템으로 자동 요청·회신
- 영향평가 담당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이내 검토결과를 제출하고 규제조정실에서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협의(「현장중심의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 단, 영향평가 담당기관은 입법예고가 종료되지 않은 안전에 대해 입법예고 종료시까지 수정의견 등 회신가능

## 4) 입법예고 단계

### ● ● 제 · 개정안별 입법예고 기간 ● ●

- **법령**: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행정절차법 제43조)
- **행정규칙**: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행정절차법 제46조)
- **WTO 통보대상 기술규제**: **60일** 이상(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6조 및 제7조, WTO TBT 협정)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작성된 규제영향분석서를 법령 제 · 개정안 입법예고시 관보 또는 부처 홈페이지 등에 게재\*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규제영향분석서를 공개해야 함

\* 규제심사 비대상인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확인서' 발급

## 5) 규제영향분석서 검증(비용 · 편익분석) 단계 - 입법예고 기간 중

### ① 규제연구센터 비용 검증

- 부처에서 제출한 표준형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하여 비용 · 편익분석의 타당성 등 검증 및 검증 보고서 작성
- 규제연구센터는 규제영향분석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증을완료하고 검증 결과(동의 또는 보완재제출)를 제시
- “보완재제출”일 경우 부처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규제영향분석서를 수정 · 보완하여 제출하고, 규제연구센터는 5일 이내 재검증
- 규제조정실은 규제연구센터 검증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재검증토록 조치

## ② 비용분석위원회 자문

- 규제연구센터 검증완료 후, 필요시 비용분석위원회에 검토·자문 요청
- 비용분석위원회는 요청(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검토·자문 결과 회신

### ●● 규제비용·편익 검증업무 처리기한 ●●

구분	1차 검증	1차 수정	2차 검증	2차 수정
담당	규제연구센터	담당부처	규제연구센터	담당부처
처리기한 (근무일기준, 일)	10	10	5	5

### ●● 규제연구센터 소관부처 ●●

구분	소관부처
한국개발연구원 (경제분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한국행정연구원 (사회분야)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 (대상) 비용상 중요규제(규제영향집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 원 이상)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비용분석위원장이 결정하는 경우

## 6) 검증의견 종합 단계(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 규제조정실은 검증의견(규제연구센터, 비용분석위원회), 영향평가(공정경쟁, 기술, 중소기업)결과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검토의견을 소관 부처로 전달

## 7) 자체심사 단계

### ① 규제영향분석서 수정 및 자체심사(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조정실·규제연구센터·비용분석위원회 검토의견, 기술·중기·경쟁 영향평가 결과, 이해관계자·관계부처 협의 과정 등에서 제시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규제영향 분석서 수정 및 보완

- \* 각종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된 규제영향분석서는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대로 지체없이 소관부처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개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체 심사

## 8) 규제심사 단계(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 ① 예비심사 - 심사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완된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 의견,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 의견 요지 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예비심사를 요청
- 법령안은 법제처 심사 전에 규제위 심사 요청을 하여야 하고,
- 고시 등(훈령·예규·고시)안은 법제처 검토를 거쳐 규제위 심사 요청(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 훈령·예규 등의 사전검토)
- 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심사를 하고, 중요 규제 또는 비중요 규제 인지를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의결된 경우에는 심사 종결하고 중요 규제는 본심사에서 심의

### ●● 중요규제 판단기준 ●●

1.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 **비용상 중요규제**
  2.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3.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4.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5.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6.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7. 중소기업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기술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8.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 ※ **중요규제 판단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이해관계인 간의 이견이 없으면서 다른 규제 대안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요규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본심사 - 심사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 본심사 요청, 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본심사(대면심사 진행)를 완료하고 심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긴급한 심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함 (법 제13조)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심사이후 입법절차(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 법령안 등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규제심사 대상 여부 등에 대해 반드시 규제조정실과 재협의

## 3 규제 비용감축제

### 가. 규제비용감축제 개념

- ❖ 규제 신설·강화로 규제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 이상으로 규제 폐지·완화를 도입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제 비용을 감축하는 제도
  -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실시('14.7월) → 규제비용감축제로 전면확대('16.7월) → 규제비용감축제로 전환('22.7월)
    - 비용분석 검증 지원을 위해 한국개발원(KDI) 및 행정연구원(KIPA)에 규제연구센터 설치('14.6월)
      - \* KDI는 경제분야, KIPA는 행정·사회분야 담당
  - ❖ 전부처 기준 신설 강화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규제비용 200%(One-In, Two-Out) 감축을 목표로 제도 운영중
  - ❖ 우리부는 자체적으로 시범추진계획('14.7)을 마련하였으며, '16년부터 국무조정실의 규제업무 평가에서 우수부처로 선정되는 등 적극 추진중
    - 규제비용감축제의 원활한 정착 및 운용 지원을 위해 '농촌경제연구원(KREI)'을 농식품 규제 비용감축제 지원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14.7월)
    - KREI에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 설치('15.7월)
      - 3개팀(총괄기획팀, 평가분석팀, 규제영향평가팀), 7명으로 운영

### 나. 기본방향

- ❖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피규제자에게 미치는 규제비용이 최소화되도록 규제 대안을 마련
- ❖ 단편적인 규제정비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시각에서 규제를 검토함으로써 규제의 품질을 제고
  - 신설·강화되는 규제로 영향을 받는 같은 법령내 또는 다른 법령에 포함된 기존규제의 폐지·완화 등의 규제정비 적극 추진
- ❖ 규제의 신설·강화 등으로 비용 증가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폐지·완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
  - 신설·강화 규제없이 별도로 규제 폐지·완화시에는 규제편익액을 적립(banking)하여 운용하는 등 규제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

❖ 정책개발 및 입법초기 단계부터 규제비용을 고려함으로써 정책의 품질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용

## 다. 적용대상 및 운용방법

### 1) 적용대상

❖ 「행정규제기본법」 상의 규제로서 피규제자(농가, 농업경영체, 농식품기업 등)에게 직접적인 비용 및 편익을 발생시키는 규제

● 신설·강화 규제뿐만 아니라 폐지·완화 규제에 대해서도 적용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비용전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규제비용 관리대상에서 제외

### ●● 규제비용감축제 적용제외 사유 ●●

- ①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 ② 조약이나 국제협정 등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규제
  - 단, 조약이나 국제협정 준수를 위한 최소 요건 이상으로 국내 규제수준을 설정(gold plating)하여 피규제자에 추가 비용을 유발할 때에는 비용감축제 적용
  - ※ 국제적 권고사항 등을 도입하는 경우 정부 차원에서 이행 합의된 사항이거나, 부처간 이견이 없는 경우임을 소명할 것
- ③ 국가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 ※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경우, 주요 선진국 기준 및 규제의 필요성·적절성(타 규제와 중복 여부, 대안 여부 등) 등을 입증할 것
- ④ 금융·외환시스템 위기의 방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환경 위기 대응과 관련된 규제로서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큰 규제
- ⑤ 1년 이하의 효력상실형 일몰이 설정된 규제
- ⑥ 통상적인 임금 및 물가상승에 상응해 기존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규제
- ⑦ 규제의 미이행·미준수로 인해 부과되는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 단, 의무부과·금지규정이 강화되어 규제가 확대·강화된 경우 비용감축제 적용
- ⑧ 1항 내지 7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용전문위원회에서 비용감축제 적용제외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

## 2) 운용방법

### ●● 규제비용감축제 적용 절차 요약 ●●

비용감축제 적용대상		적용비대상	
비용분석 가능		비용분석 불가	
① 비용 100억원 미만	② 비용 100억원 이상	③ 심사처리제	④ 간편심사제
규제비용분석서 작성 ↓ 규제연구센터(KDI) 검증	규제비용분석서 작성 ↓ 규제연구센터(KDI) 검증 ↓ 비용전문위원회 심의	유사규제 선정(부처자체) ↓ 비용전문위원회 심의	규제비용분석서 작성 ↓ 규제조정실 검토 ↓ 비용전문위원회 심의
↓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본심사			

#### ❖ 규제비용분석

- 규제비용 및 편익을 화폐 단위(금액)로 산출하여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용
- (심사처리제) 다만, 규제비용 분석이 어려운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성질·강도·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규제지수를 활용하여 분석
  - 화폐단위로의 규제비용·편익 산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규제
  - 규제기준 및 규제범위 설정이 매우 어렵고, 관련 통계 등이 전무하여 비용분석 추계(시물레이션)조차 불가능한 규제

#### ❖ 규제비용분석의 적정성 심의

- 일정규모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연구센터의 검증을 받아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의 비용전문위원회에서 심의
  - ※ 규제검증은 원칙적으로 입법예고 전에 규제연구센터에 규제비용분석서를 작성·제출하여 입법예고 기간 내에 규제비용검증 실시
- (간편심사제) 규제에 영향을 받는 피규제자의 범위가 적은 규제 등은 국무조정실이 검토(규제연구센터의 검증 생략)하여 비용전문위원회에 상정·심의
  - 규제의 직접비용이 낮은 규제

- \* 예시 : 매년 기업에 초래하는 비용이 10억 미만, 자격기준·요건 등 관련 규제로서 직접비용이 크지 않은 규제 등
- 기존 규제의 폐지·완화로 인해 보완 또는 수반되거나\*,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수되는 절차 관련 규제\*\*
  - \* (예시)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여 보세구역내 석유제품 혼합제조행위를 허용함에 따라 기존 석유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 (예시) 직불금 등 농업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면서 농업인임을 확인하는 관련 서류(확인서)를 제출토록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 비용분석 불가규제로서 규개위(비용전문위)의 심사처리제를 통해 처리하는 경미한 규제

## 라. 지원기구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에 「농식품 정책 성과관리센터」를 설치(2015.7)하여 농식품부의 정책 개발 및 입법초기 단계부터 정책의 품질(규제비용 고려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용

### ●● 농식품정책 성과관리센터 업무수행 네트워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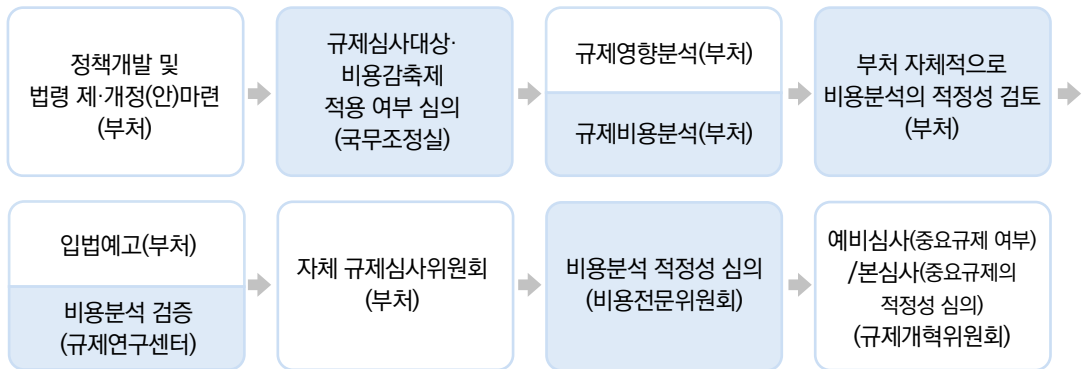
- ❖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작성한 규제비용분석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비용전문위원회” 설치·운영(‘14.8)



- (규제사전심사) 부처가 계획하고 있는 규제의 규제비용감축제 적용여부, 비용분석 가능여부, 간편심사(저비용 규제) 해당여부 등 심의 결정
  - (규제비용심의) 규제비용감축제 적용 대상 규제에 대해 부처가 작성한 규제비용분석의 적정성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
- ❖ “비용전문위원회”의 비용 검증 지원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행정연구원(KIPA)에 규제연구센터 설치·운영(‘14.6)
- KDI는 경제부처, KIPA는 행정사회부처 규제비용분석 검증
  - 다만, 비용이 적은 규제에 대한 규제비용(저비용 규제) 분석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에서 검토하여 비용전문위원회에 안건 상정

## 마. 세부 운영절차

### ●● 규제심사 절차 요약 (규제비용감축제 포함) ●●



\* 음영은 규제비용감축제 관련 절차

### 1) 정책개발 및 법령 제·개정(안) 마련(농식품부)

-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정책개발 및 법령 제·개정 구상단계부터 규제비용을 고려하여 대안 검토
  - 정책개발 및 법령 입안을 위한 연구용역시 규제비용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병행하여 대안 검토시 활용
  - \* 피규제자의 범위, 규제비용 및 편익항목의 구체화, 규제항목별 단가, 규제의 신설·강화/폐지·완화 등에 따른 피규제자의 수(數) 변화 전망 등

- 규제의 신설·강화 등으로 규제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폐지·완화 규제 발굴 (필요시 타 부서와 협의)
  - 특히, 규제의 신설·강화로 영향을 받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
- 규제의 신설·강화 또는 폐지·완화가 포함된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의 정비가 포함되는 정책의 기본방침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법령 제·개정안 마련시에는 사전에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과 협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실·국이 마련한 정책에 규제비용 분석 및 대안검토 여부 검토
  - 필요시 자문실시(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 규제영향평가팀 등 활용) 및 법령정비협의회에 상정하여 적정성 논의

## 2) 규제심사대상 및 규제비용감축제 적용여부 심의(국무조정실)

- 규제심사대상 및 규제비용감축제 적용여부 검토서를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출(1안건 1파일)
  - 자료제출시 기본방침서 및 참고자료 첨부
-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은 규제심사대상(신설·강화) 여부를 확인
  - \* 신설·강화 규제 없음으로 판단된 법령은 법제처 심사단계로 진행(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 첨부)
- 규제개혁위원회(비용전문위)는 규제비용감축제 적용대상 여부 및 비용분석 유형(간편심사제, 심사처리제 등) 등을 심의하여 결정
- 국무조정실은 규제심사 대상 및 규제비용감축제 적용여부에 대한 심의결과를 부처에 통보

## 3) 규제비용 분석서 작성(농식품부, KREI 협조)

- 업무담당부서는 비용전문위원회의 규제비용감축제 적용 대상으로 심의된 규제에 대해서는 비용 분석 유형(간편심사제, 심사처리제 등)을 고려하여 규제비용분석서 작성
  - \* **규제비용감축제 적용을 위한 비용분석서 작성과 함께 “규제영향분석서”도 작성하여야 하며, 규제비용감축제 적용 제외 규제는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 폐지·완화 규제는 자율적으로 과제 발굴하여 규제비용분석서 작성
- 규제비용분석서는 규제연구센터의 규제비용검증 중점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작성

## ●● 규제연구센터의 규제비용검증 중점 검토사항 ●●

- 비용 부담 대상자 및 항목을 정확히 식별했는가?
-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을 산정했는가?
- 신뢰성있는 통계와 데이터를 사용했는가?
- 공식적인 통계 미비시 분석에 대한 가정 및 추정치 제시가 합리적인가?
- 할인율을 고려, 현재가치로 비용과 편익을 제시했는가?
- 분석에 대한 근거 및 데이터가 충분히 제시되었는가?
-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및 피규제자에 대한 의견청취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 신설·강화 규제와 폐지·완화 규제와의 비용교환에 따른 적립분이 정확히 산정되었는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및 KRE는 업무담당부서의 규제비용 산정 업무 지원을 위해 자문 실시

### 4) 규제비용분석 적정성에 대한 우리부 자체 검토(농식품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업무담당부서가 제출한 규제비용분석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출
  - 필요시 농식품 규제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규제비용 검증 실시

### 5) 부처가 작성한 규제비용분석서 검증(규제연구센터)

- 국무조정실은 부처가 제출한 규제비용분석서를 규제연구센터(우리부 소관업무의 경우 KD)가 검증하도록 하고, 검증결과를 부처에 전달
- 간편심사 적용대상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연구센터의 사전 검증을 생략하고, 국무조정실이 직접 검토하여 의견을 부처에 통보
- 농식품부 업무담당자는 규제연구센터의 검증보고서 또는 국무조정실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규제비용분석서를 보완
- 보완된 규제비용분석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을 거쳐 국무조정실에 제출

### 6) 규제비용분석의 적정성 심의(규제개혁위원회의 비용전문위)

- 국무조정실은 부처가 제출한 규제비용분석서를 비용전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 비용분석·검증의 적정성 여부, 복수의 대안 검토 여부, 규제의 폐지·완화로 인한 부작용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여·심의
- 비용분석·검증의 적정성 및 규제비용 교환에 따른 적립분(banking)에 대해 최종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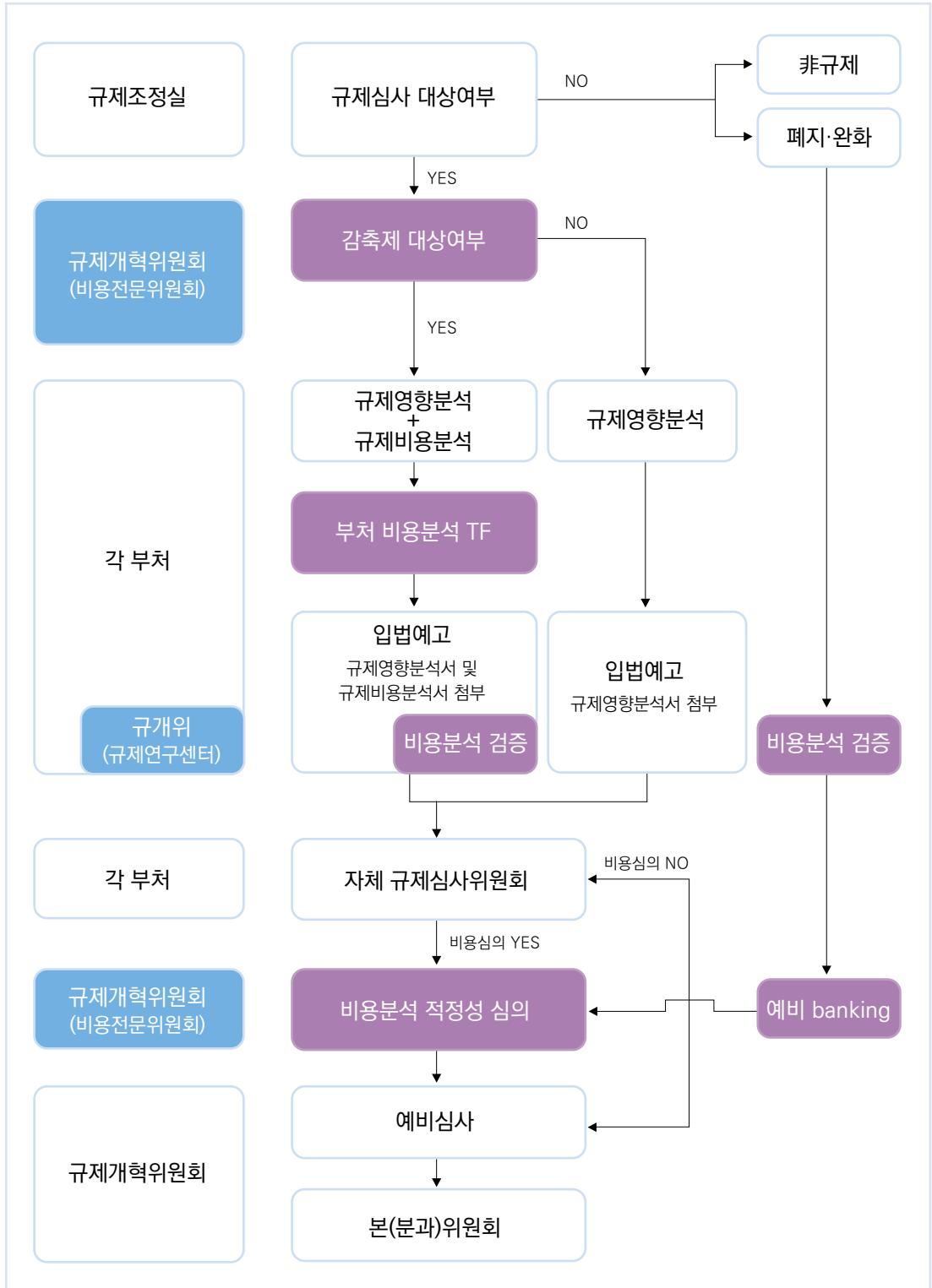
## 7) 규제심사(규제개혁위원회)

- 비용전문위원회의 규제비용 심의결과를 제출받아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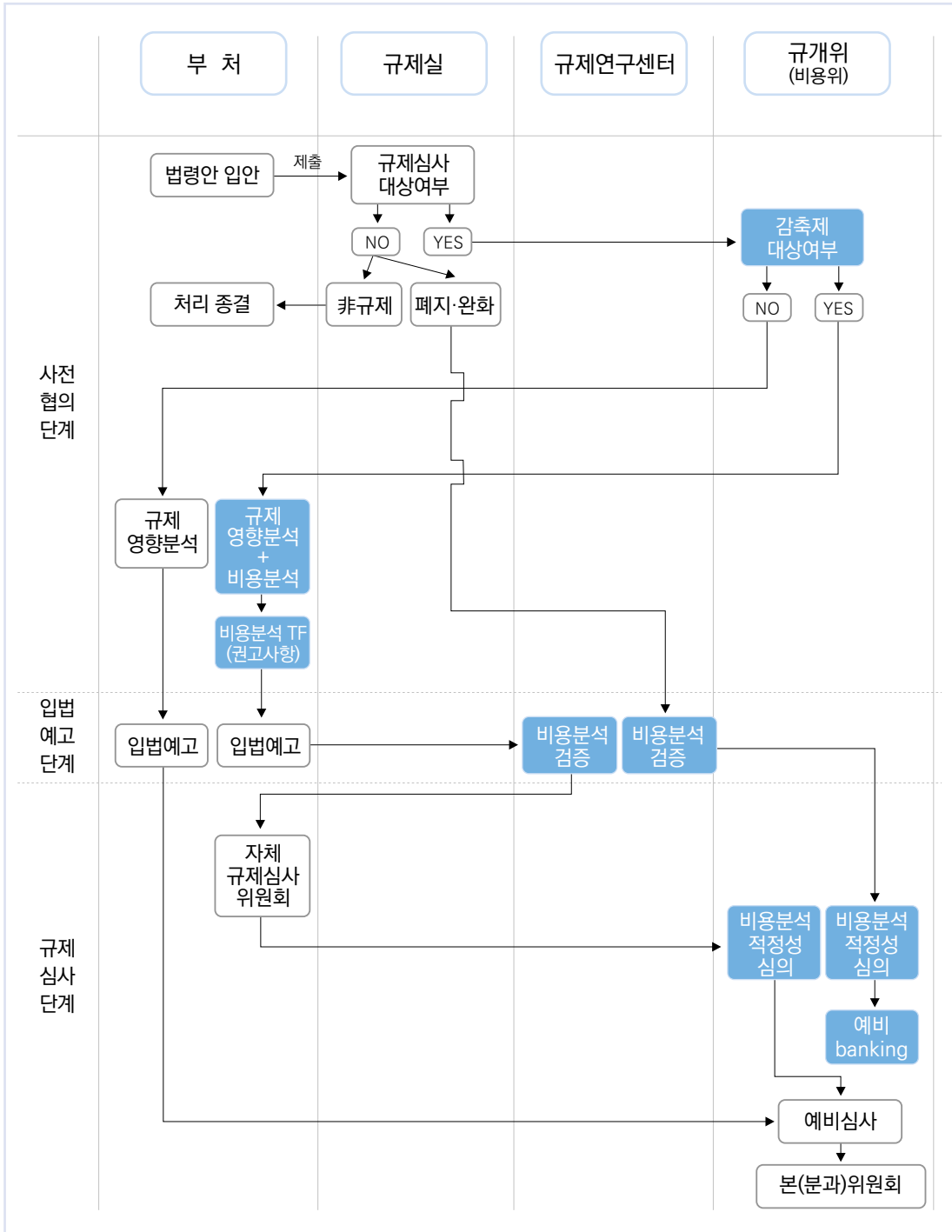
## 8) 규제비용의 정산 및 공개(국무조정실)

- 신설·강화 규제와 폐지·완화 규제의 교환에 따른 비용적립분(저축 또는 부채)은 규제 등록시를 기점으로 정산·관리
- 규제비용은 규제정보포털 및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참고 | 규제비용감축제 운영절차도(1)



| 참고 | 규제비용감축제 운영절차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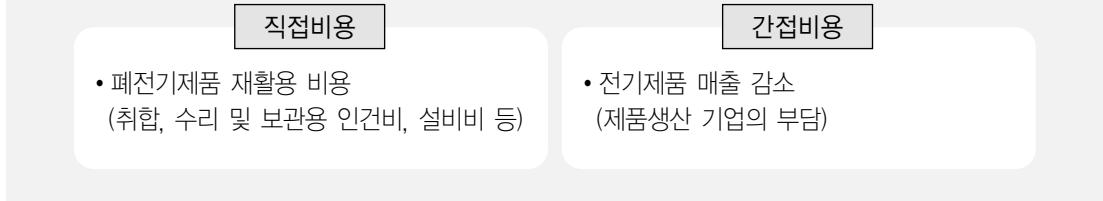


## | 참고 | 규제비용 분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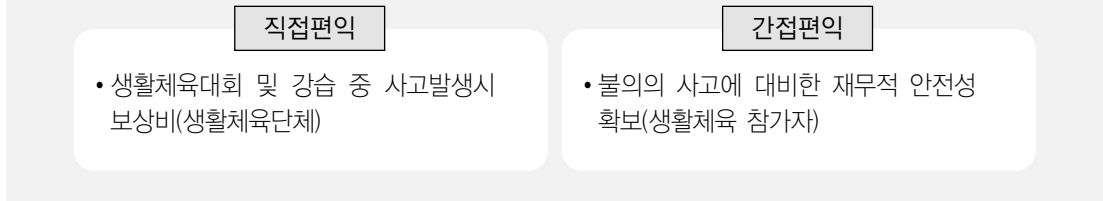
### ❖ 비용·편익의 직·간접분류 판단기준 및 사례

구분		개념
비용	직접비용	규제로 인해 피규제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 * 규제의 의도한 효과였는지와 무관하게 직접 부담하는 금액
	간접비용	규제로 인해 피규제자가 2차적 효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
편익	직접편익	규제로 인해 피규제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편익
	간접편익	규제로 인해 피규제자에게 2차적 효과로 발생하는 편익

(예) 폐전기제품 재활용 목표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 도입시



(예) 생활체육단체 보험가입 의무화



### ❖ 비용·편익의 직·간접 범위

구분	범위
직접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부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문서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li> <li>• (노동)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li> <li>• (교육훈련) 교육 훈련비용 및 교육참여로 인한 기회비용*</li> <li>* 대부분 인건비(시간당 임금)를 사용하여 측정하나 필요시 차별화된 지표로 산정</li> <li>• (외부서비스) 전문가 자문비용, 시스템 위탁비용 등 외부기관에 지출된 비용</li> <li>• (설비) 기계장비 등의 기자재 구입비용</li> <li>• (원재료) 규제로 인해 사용된 각종 투입재 비용</li> </ul>

구분	범 위
직접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 규제로 인해 투입한 인력이 사용하는 사무용품 등 각종 용품 및 관리운영 비용(전기요금, 교통비, 보험료 등)</li> <li>• (지연비용) 규제이행에 따른 사업운영 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 등 이익의 감소</li> <li>• (기타) 그 밖에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피규제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 등</li> </ul>
간접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감소) 피규제 기업이 생산·공급하던 상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li> <li>• (매출감소) 규제로 인한 비용증가 발생시 상품단가를 인상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의 감소</li> <li>• (기회비용) 규제로 인해 기업이 기존의 생산·공급 및 영업방식 등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이윤 등</li> </ul>
직접 편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용절감) 피규제자가 지불했던 비용 혹은 부담의 절감으로 발생하는 편익</li> <li>• (보조금 등) 정부보조금 등 피규제자가 직접적으로 받는 금전적 이익</li> <li>• (기타 영업이익) 변경된 규제의 시행 자체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영업이익, 기업의 이윤 등</li> </ul>
간접 편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증가) 피규제 기업에 대한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 품질 향상 등으로 당해 기업이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li> <li>• (매출증가) 규제로 인해 특정원료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 대체원료의 매출증가</li> <li>• 그 밖의 환경오염 개선, 국민안전, 삶의 질 등 사회 전체적 편익</li> </ul>



# CHAPTER 06

## | 제6장 | 규제등록제도

1. 규제등록제도의 개요
2. 규제등록 절차
3. 법령 유형별 규제등록대상 검토 절차
4. 규제등록 관련 Q&A

2023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업무 매뉴얼

# 1 규제등록제도의 개요

❖ 규제의 파악 및 관리, 규제내용 및 변경사항의 공개를 통한 국민의 감시 기능의 강화를 목적으로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과 함께 도입·시행

● (법적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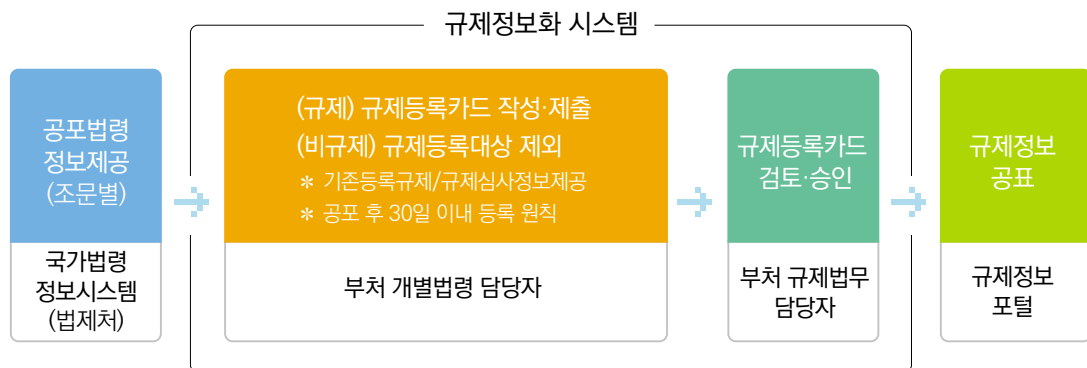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개인 기업 등 수요자에게 전체적인 규제체계나 프로세스 등 규제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규제의 총량관리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의 방향제시 등 규제의 질적 관리를 위한 수단 제공이 목적

❖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등록체계)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부처책임자 자율 등록 중

## ●● 규제등록 및 공표 절차 ●●



\* 규제 해당 여부는 '행정규제 판단기준'에 따라 부처가 자체적으로 판단

\* 등록 규제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상시 공개

- (등록단위) 규제조문(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 \* 15년 등록제도 전면개편에 따라, 규제사무에서 규제조문으로 등록단위 변경
- (등록내용) 규제등록카드 양식에 따라 **상하위 연계법령, 규제사무명, 규제요지\***, **일몰정보\*\***, **주요 검색어, 공포·시행일** 등을 입력
  - \* 일반 국민이 해당 규제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표현으로 작성
  - \*\* 법령 등에서 '규제의 재검토' 조문으로 재검토 기한이 설정된 경우 작성

## 2 규제등록 절차(규제정보화시스템)

### 1 수신된 제·개정 법령정보 확인

☞ [규제정보화시스템 > 규제등록관리 > 규제등록]

-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어 심사를 받은 조문제목과 최종 개정된 조문제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심사받은 규제등록' 카테고리에서 확인 가능
- 그 외 나머지 조문은 '그 외 규제등록' 카테고리에서 확인 가능(심사를 받았으나 조문제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포함)

### 2 법령이 전부개정된 경우에는 먼저 '전부개정 법령' 카테고리에서 기존 규제조문을 새로운 규제조문으로 변경하여야 함

- <예시> 기존 규제조문인 3조의2가 전부개정으로 현행 4조로 바뀐 경우 이를 반영

### 3 해당 제·개정과 관련한 규제심사 내용(시스템에서 **罙**로 표시)을 확인하여 '심사받은 규제등록' 카테고리에 있는 조문을 먼저 수정 또는 신규 등록

- '작성대기'를 클릭하면 규제등록카드가 나오며, 상하위 법령의 연계, 규제사무명, 규제요지, 일몰정보, 주요검색어 등을 작성

### 4 '그 외 규제등록'에 있는 제·개정 조문 중 현재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 조문인 경우(시스템에서 **罣**로 표시) 등록된 내용과 현행 조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수정 등록

### 5 나머지 '그 외 규제등록'에 있는 제·개정 조문 가운데, 해당 제·개정 관련 규제심사 정보를 확인하여 △규제심사(중요/비중요)를 받았으나 '심사받은 규제등록'에 매칭이 누락된 경우, △'규제완화'임을 이유로 규제심사 비대상에 해당된 경우에는 신규로 등록

- ☞ 규제심사 대상여부 확인 [규제정보화시스템 > 부처자체심사 > 심사대상여부확인 > 규제심사대상현황]
- ☞ 규제심사 결과 확인 [규제정보화시스템 > 부처자체심사 > 안건관리 > 안건처리현황]

⑥ 그 외 남은 조문은 규제여부를 개별 검토하여, 규제로 판단될 경우 신규로 등록

- 법률의 경우, 규제심사를 받지 않고 의원입법을 통해 신규 규제 조문 제·개정이 가능하므로, 담당자들이 규제 여부를 판단하여 직접 등록해야 함

⑦ 규제가 아닌 조문인 경우에는 등록대상제외 처리

- 행정내부사항이거나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지 않는 내용인 경우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벌칙, 과징금, 과태료 등)

### 3 법령 유형별 규제등록대상 검토 절차

① 법률



## ②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 반드시 규제심사를 거치는 경우



## | 참고 | 규제의 변경·폐지

### 1. 규제의 변경·폐지의 원인

#### 가. 규제목적의 달성 또는 문제의 소멸

- ❖ 규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목적을 달성하거나 문제가 해소된 경우 관련 규제는 폐지·변경됨

#### 나. 규제환경의 변화

- ❖ 규제는 특정시대의 경제·사회적 배경하에 생성된 것으로 경제·사회적 환경이 변화되면 규제도 변경되거나 폐지
  - 시장 및 민간부문의 성장에 따라 정부개입의 필요성 저하
  - 최근 급격한 기술변화, 정보화, 금융분야의 발전 등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규제의 타당성이 약화
- ☞ 규제는 시대적, 경제·사회적 환경의 산물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경되거나 폐지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국가·경제적 비용 유발 등 부작용 발생

## 2. 규제의 변경 · 폐지 필요성

### 가. 필요성

- ❖ 기준과 절차가 비현실적인 규제는 법과 현실간의 괴리 현상을 확대하여 규제준수율을 낮춤으로 정부 규제에 대한 불신 유발
- ❖ 기존의 기술과 산업형태를 기반으로 한 규제가 신기술, 새로운 산업분야의 도입 ·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 ❖ 환경 · 복지 · 안전등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분야의 규제의 강화 또는 합리화 요구 반영
  - ☞ 규제는 한번 만들어지면 그로 인한 기득권의 존재, 소관 부처의 규제권한 유지 노력 등으로 개편 · 폐지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규제를 환경변화에 맞게 개편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으로서의 지속적인 규제개혁이 필요

## 3. 규제의 변경 및 폐지의 기준

### 가. 규제 존속기한의 설정

- ❖ 급변하는 경제 ·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년 이내 존속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는 계속 존속해야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음(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 ❖ 이는 현행 규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규제개혁을 주기화하여 규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임

### 나. 규제의 타당성

- ❖ 기본원칙
  - 민간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중심으로 타당성 등 검토
  - 「원칙금지 예외적허용」(Positive List) 방식의 규제는 가급적 「원칙허용 예외적금지」(Negative List) 방식으로 개선

- 기대효과와 편익에 비해 순응비용 및 부작용이 큰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해결을 유도
-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규정되거나, 내용이 중복되어 혼란을 야기하는 규제를 체계적으로 일원화
- 지식정보화, 전자정부화, 기술발전 등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규제의 폐지 또는 합리화
- 국제관례나 국제기구와의 협약내용과 상충되는 내용은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 선진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준수율이 낮은 비현실적 규제는 폐지 또는 합리화

#### ❖ 규제영향분석

-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
- 규제 문제의 정의, 규제목표의 적정성, 비용과 편익의 분석 등을 통해 규제의 존치 여부 또는 대안의 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존속기한 연장시에도 반드시 규제영향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음
- ☞ 규제의 변경·폐지과정은 규제의 피드백의 과정으로 규제의 타당성 및 규제대안 검토 등 규제의 형성·입안 등 규제절차와 과정과 동일한 절차와 검토를 거치며 변경 이후에도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함

### 1. 규제등록은 규제심사를 받은 규제만을 등록하는 것인가요?

- ❖ 규제등록은 규제심사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해당 조문이 규제인 경우 이를 등록하는 것
- ❖ 규제심사의 과정에서 규제 해당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규제정보화시스템에서는 규제 심사를 받은 경우(심사받은규제)와 그렇지 않은 경우(그 외 규제)로 구분하여 개정법령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 심사받은 조문 제목과 최종 제·개정된 조문 제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일치하는 경우, '심사받은 규제등록' 탭에서 확인되도록 함
    - 일부 기술적 사유로 누락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 심사를 받았지만 '그 외 규제등록' 탭에서 확인될 수 있음
- ❖ 다만, △규제심사 비대상인 경우에도 규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심사 없이 법률로써 규제가 신설될 수 있고, △상기 기술적 사유 등으로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의 이유로 부처의 법령 등이 제·개정된 경우에는 '심사받은 규제등록' 과 '그 외 규제등록' 을 모두 확인하여 등록하여야 함
  - \* 규제심사 시 '규제완화에 해당함' 을 이유로 규제심사 비대상이 되는 경우 등

### 2. 규제심사 결과를 반영한 규제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 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비대상(비규제)' 로 판단된 경우에는 등록대상 행정규제가 없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의 '행정규제' 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3조제2항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비규제

- 행정규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 행정 내부 규율인 경우, 국민의 권리 제한 · 의무 부과 사항이 아닌 경우 등 : 비규제
- 적용제외 대상 :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및 감사원의 사무,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



❖ 다만, 개정 내용이 규제의 완화임을 이유로 '규제심사 비대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문의 규제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된 경우 등록하여야 함

\* 규제등록 상황을 확인하여 '그 외 규제등록' 탭에서 등록 필요

❖ 규제심사대상으로 최종 '중요' 또는 '비중요' 규제로 판단된 경우에는 규제임이 명확하므로, 신규 및 수정 등록해야 함

\* 규제심사받은 조문인 경우, 일반적으로 '심사받은 규제등록' 탭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조문 제목 변동 및 기타 사유로 '그 외 규제등록' 탭에 나올 수 있음

### 3. 의원입법으로 법률이 제·개정된 경우, 규제심사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규제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규제심사를 받지 않은 의원입법 제·개정 법률의 경우에는 '행정규제 판단기준'에 따라 규제 여부를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등록할 수 있음

####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조문제목에 "허가", "취소", "기준/요건", "보고/신고", "금지" 등 단어가 사용된 경우 통상 규제로 판단 가능

❖ 상기 과정에서 규제에 등록하지 않았으나, 관련된 하위법령에 대한 규제심사 시 상위법률 근거로 인정되는 조문인 경우에는 규제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누락 규제에 등록할 수 있음

#### 4. 같은 조문이 등록대상으로 여러 건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 ❖ 같은 조문에 대한 규제심사 정보가 여러 건인 경우\* 중복 매칭되어 나타나는 경우 발생

\* 가까운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개정이 된 경우 등

- ❖ 개정 시점이 다른 경우, 연혁 관리를 위해 가급적 순서대로 수정 등록을 해야 함. 다만, 규제의 내용에 큰 변화가 없는 사소한 개정\*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개정을 등록하면, 이전목록은 사라짐

◆ 예시 : ○○○ 행정규칙 ○○조(허가취소 등) “~ 취소기준은 별표와 같다”

\* 공포일이 각각 3월(일부개정), 7월(일부개정), 12월(타법개정) 3건이고, 각각 별표(등록대상은 별표가 아니고 해당조문)만 개정된 경우

→ 규제등록카드에 별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내용에 변동이 없으므로, 가장 최근인 12월 개정 건만 수정등록(갱신)

#### 5. 규제등록된 조문제목과 내용이 현재 법령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 전부개정을 통해 조문번호 등이 변경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규제등록된 조문제목과 내용이 현재 법령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 전부개정 법령은 ‘전부개정법령’ 탭에서 개정 전 법령정보와 현재의 법령정보를 비교하여 기존 규제등록된 규제조문을 현재의 규제조문으로 일괄변경(기존 규제등록된 조문의 변경만 가능) 후, 나머지 조문들을 현재 기준으로 등록(심사받은규제등록, 그 외 규제 등록)해야 함

## 6.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조문과 등록하지 않아야 하는 조문이 있을까요?

- ❖ 제·개정 과정에서 ‘규제의 재검토’라는 제목으로 재검토행 일몰 대상이 된 조문은 반드시 규제등록을 해야 함

◆ 예시 : ○○○ 시행령 40조(규제의 재검토) “○○○ 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5조에 따른 법 적용 배제기준 : 2017년 1월 1일
2. 10조에 따른 등록시 제출서류 : 2018년 1월 1일
3. 20조에 따른 실무수습기간 : 2019년 1월 1일

→ 40조가 아닌 5조, 10조, 20조가 규제등록대상이며, 일몰정보와 함께 등록  
→ 모든 규제가 일몰대상은 아니므로 그 외 조문에도 규제 존재 가능

- ❖ 벌칙·과태료·과징금 조문 등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제외대상은 규제로 등록하지 않음

◆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CHAPTER 07

| 제7장 |  
우리부 규제혁신 사례

1. 우리부 규제혁신 사례
2. 타부처 발표 사례

2023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업무 매뉴얼

# 1

## 우리부 규제혁신 사례

### 1. 2023년 기존규제 정비계획(18건)

●● (신산업) 농식품 분야 신산업 개발·스마트 규제혁신 ●●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스마트 작물재배사 농지입지 규제 완화	<p><b>기존</b> 농작물 생장·생식에 최적화된 온도·양분·빛에 관한 DB를 토대로 이를 원격제어하는 ICT를 접목한 스마트 작물재배사*가 등장했으나, 설치규격·기준, 세부 관리·입지에 관한 별도 법령이 없어 현행 농지법·건축법 등에 따라 일반 작물재배사의 일종으로 관리</p> <p>* 수직농장, 모듈형(컨테이너형) 농작물 생산시설, 아쿠아포닉스 등</p> <p><b>개선</b> 법령 개정을 통해 스마트작물재배사의 농지입지에 대한 규제완화</p>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23.12월
2	가축 종류 확대를 통한 곤충산업 진흥	<p><b>기존</b> 「축산법」의 '가축'은 '소·말·돼지 등의 사육동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동물'이며, 이 중 곤충 분야 14종은 '19년 고시 개정을 통해 가축에 편입되었으나 대부분 식용, 학습용 곤충이 지정되어 사료용 곤충은 2종에 불과</p> <p><b>개선</b> 고시(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개정을 통해 곤충 종류(현 14종)에 동애등예, 메뚜기 등 포함</p>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고시) 개정	'23.10월
3	저탄소 축산물 정의 및 지급 품목 인증제 도입	<p><b>기존</b> 축산업에 대해서는 저탄소 축산 기술에 대한 범주 및 전과정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저탄소축산물 인증이 없는 상황</p> <p><b>개선</b>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 운영 규정」에 저탄소 축산물 정의 및 인증대상 품목·기술 등 규정 마련</p>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고시) 및 시행지침 개정	'23.12월

●● (신산업) 반려동물 산업 분야 규제개선 ●●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4	반려동물행동 지도사 국가자격 제도 도입	<p><b>기존</b>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로 안전사고·소음 등 사회적 갈등이 함께 증가하지만, 반려동물 행동지도·훈련 등에 관한 자격이 민간에서 제각기 운영중</p> <p><b>개선</b> 관련 자격·전문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 자격제 도입</p>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의견수렴 등을 통한 개정안 마련)	'24.4월 ( '23.12월)
5	안면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허용	<p><b>기존</b>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으로 동물을 등록하여야 함</p> <p><b>개선</b> 등록방식에 반려견의 안면인식 방법 추가</p>	실증 특례 기간 발생한 문제점 파악 등 해당 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검토 (문제점 파악 등 모니터링)	'24.12월 ( '23.12월)
6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 실증 특례 추진	<p><b>기존</b>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경우 단독 건물 등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p> <p><b>개선</b>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에 대해 2년간 실증 특례를 적용하여 해당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 화장시설 확충에 따른 서비스 다양화, 반려동물 소유자의 편의성 제고</p>	실증 특례 기간 발생한 문제점 파악 등 해당 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검토 (문제점 파악 등 모니터링)	'24.12월 ( '23.12월)
7	동물장묘업 설치 입지제한 완화	<p><b>기존</b> 「장사법」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 동물 전용 장례식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영업등록을 할 수 없음</p> <p><b>개선</b> 동물장묘업 중 화장·건조장·수분해장 시설, 봉안시설을 제외한 동물전용의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설치 거리제한 등 관련 입지제한 규정을 완화</p>	동물보호법 개정 (의견수렴 등을 통한 개정안 마련)	'24.4월 ( '23.12월)

●● (기업부담) 농식품 분야 기업불편 해소 ●●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8	초지법상 부담금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	<p><b>기존</b> 산업집적법상 '첨단투자지구' 목적으로 초지 전용할 경우,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않아 기업의 신규 첨단 투자 위축</p> <p><b>개선</b>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중요산업시설 기준에 산업집적법상 '첨단투자지구'를 추가하여 기업의 첨단 투자 인센티브 제공</p>	초지법 시행령 개정	'23.12월
9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표시 개선	<p><b>기존</b>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사업장이나 생산·가공한 제품 및 그 제품의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인증표시가 가능하나, 인증마크·인증번호·인증기간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3년마다 포장재 변경이 필수적</p> <p><b>개선</b> 「농촌융합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인증기간 표시 의무 삭제</p>	농촌융합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23.12월
10	국내가공품과 수입가공품의 원산지표시방법 통일	<p><b>기존</b> 수입 가공식품의 경우 표시사항이 국내 가공식품과 거의 유사하나, 원산지 글자 크기 규정만 상이하여 비의도적 위반이 발생함</p> <p><b>개선</b>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 글자크기를 국내 가공식품의 원산지 글자크기와 동일한 규정(10포인트 이상, 굵게 및 장평·자간 기준 적용)으로 통일</p>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개정	'23.9월
11	매립지(간척지) 등의 매각대금 납부 방법 개선	<p><b>기존</b> 매립지등의 매각대금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매각대상 자격자가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며, 농지 이외의 매각대금은 전액을 일시납부토록 규정</p> <p><b>개선</b> 매립지등 농지 이외의 매각대금 납부 시 전액납부가 곤란한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재정부담 완화</p>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23.9월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2	매립지(간척지) 등의 임대료 납부시기 조정가능 사업 추가	<p><b>기존</b> 매립지등의 임대료 납부시 계약일 90일 이내 전액 납부해야 하며, 농작물의 경작과 농수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단지 조성 및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한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p> <p><b>개선</b>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업교육훈련사업 등에 대한 임대료 납부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완화</p>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23.9월
13	종자업등록 시설 및 장비기준 완화	<p><b>기존</b> 농업생산의 안정을 위하여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종자업 등록을 하도록 함</p> <p><b>개선</b> 작물의 종류별로 종자의 육성·증식·가공 등에 꼭 필요한 시설·장비를 선정하고, 적정 기준 마련</p>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	'23.12월

●● (국민불편) 농식품 분야 국민불편 개선 ●●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4	생산관리 지역에서의 건축 특례 범위 확대	<p><b>기존</b> 「국토계획법」에 대한 특례는 융복합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만 적용토록 하고 있어, 기존 시설의 용도 변경 등을 통한 식품접객업 등 허용 불가</p> <p><b>개선</b> 「농촌융합산업법」 제8조의3을 개정하여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 설치를 통한 식품접객업 등을 명시적으로 허용</p>	농촌융합산업법 개정	'23.12월
15	손해평가사에 대한 업무 위탁범위 제한 해제	<p><b>기존</b> 재해보험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손해사정사(보험업법, 금융위)와 손해평가사(농어업재해보험법, 농식품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상이*</p> <p>* 손해사정사는 손해평가 업무와 보험 가입 농지에 대한 현장 확인·심사업무를, 손해평가사는 손해평가 업무만을 위탁받아 수행 가능</p> <p><b>개선</b> 손해평가사가 재해보험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손해평가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 →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가입 농지 현장 확인·심사 투입인력을 확보</p>	농어업 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	'23.12월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6	경영회생 지원사업 환매이자율 및 분납기간 개선	<p><b>기존</b> 경영회생지원사업 참여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환매 조건(이자율 및 분납기간 등) 등 제도개선 요구</p> <p><b>개선</b> 경영회생지원사업 환매이자율 인하 및 분납기간 연장 등 개선 * 환매이자율: (현행) 3% → (개선) 2~3% 분납기간: (현행) 3년 → (개선) 5~10년</p>	시행지침 및 농어촌공사법 시행규칙 개정	'23.9월
17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친환경인증 재심사 요건 마련	<p><b>기존</b> 친환경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인증기관은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 → 농가가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주장함에도 인증기관이 재심사 없이 바로 인증을 취소하는 사례 발생</p> <p><b>개선</b>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반드시 재심사하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8조 개정</p>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23.6월
18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간소화	<p><b>기존</b> 도시농업관리사(국가자격증) 신규 발급 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토록 규정 * 도시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도시농업전문과정 이수증, 사진</p> <p><b>개선</b> ①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여부를 담당자가 확인하고, ② 사진 등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 간소화</p>	도시농업법 시행규칙 개정	'23.12월

## 2. 2022년 규제개선 추진 실적(완료 과제)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p><b>기존</b>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공유재산법상 지자체 소유부지로 장기임대 및 수의계약이 불가하여 혁신밸리내 기존 농가의 온실 신축 등 곤란</p> <p><b>개선</b>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장기임대 및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특례 제도 마련</p>	스마트농업 육성법 제정	완료 ('22.11월 국회제출)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2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도입	<p><b>기존</b> 축산물 경매는 전국 도매시장(14개소)에서 대면 방식으로만 가능</p> <p><b>개선</b> 온라인으로 축산물 영상, 등급판정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는 원격지에서 온라인으로 경매 참여가 가능한 온라인 경매 허용</p>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시스템 구축 및 도입	완료 (’22.7월)
3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조성	<p><b>기존</b> 농공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재난·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의 인프라 구축 미흡</p> <p><b>개선</b> 농공단지에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구축, 에너지 관리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그린 기술 도입 모델 조성</p>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완료 (’23.3월)
4	동물용의약외품 범위 확대	<p><b>기존</b> 동물용의약외품에 식이섬유 및 동물용 외용살포제는 사용 불가</p> <p><b>개선</b> 식이섬유 및 동물용 외용살포제 사용을 허용 하여 동물약품 산업 활성화 기여</p>	동물용의약 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완료 (’22.12월)
5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p><b>기존</b> 반려동물 행동지도·훈련 등에 관한 자격은 민간에서 부여하며 제각기 운영되어 공신력 부족</p> <p><b>개선</b> 반려동물 훈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p>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완료 (’23.4월)
6	동물병원 진료비용 고지제도 도입	<p><b>기존</b> 동물병원은 진료비 고지의무가 없어 진료비 과다·과잉진료 등 국민 불편 지속</p> <p><b>개선</b> 동물병원 개설자가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고지하는 제도 도입</p>	수의사법 하위법령 개정	완료 (’22.7월)
7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용료 인하	<p><b>기존</b> 저수지, 수상레저시설 등의 농업생산기반 시설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사용료 감면 규정 없음</p> <p><b>개선</b> 공공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규정 신설</p>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완료 (’22.5월)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8	세척농산물 처리시설 지정기준 완화	<p><b>기존</b> 세척농산물 처리시설의 내벽과 천장에 돌출부위(허브, 배관 등)가 없도록 규정</p> <p><b>개선</b> 위생적으로 세척·포장 후 껍질 제거 후 먹는 과일류는 내벽과 천장의 돌출부위 허용 (단,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처리한 농산물은 제외)</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22.12월)
9	국제종자 검정협회의 국제인증실험실 인증범위 확대	<p><b>기존</b> 국제종자검정협회(ISTA)의 국제인증실험실로 인증받은 후 그 자격유지를 위해 검정 시험 응시가 필수이나 검정능력 시험용 종자는 국립종자원만 수입 가능</p> <p><b>개선</b> 국제인증실험실로 인증받은 민간 종자 회사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용 종자 수입 허용</p>	해외채종 수출용 종자 등의 검역요령 고시 개정	완료 (’22.5월)
10	간척지 활용 사업 용도에 임산물 추가	<p><b>기존</b> 농·축·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으로 간척지 활용 사업 범위 제한</p> <p><b>개선</b> 간척지활용 사업 범위에 임산물도 추가</p>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완료 (’22.7월)
11	농촌주택개량 사업 대상자 및 대출 한도 확대	<p><b>기존</b>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이 한정적이고 선금 대출 한도가 4천만원(신축 등)으로 낮은 수준</p> <p><b>개선</b> 내·외국인 근로자 채용예정인 경우도 사업신청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및 대출 한도를 6천만원으로 확대</p>	농촌주택 개량사업 시행지침 개정	완료 (’22.2월)
12	농지연금 가입대상자 확대	<p><b>기존</b>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은 만 65세 이상</p> <p><b>개선</b> 가입연령 기준을 만 60세로 완화</p>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	완료 (’22.2월)
13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대상 확대	<p><b>기존</b> 농번기 돌봄방은 만2세~초등 2학년만 이용 가능</p> <p><b>개선</b> 돌봄방 이용대상인 만2세~초등 2학년과 형제자매인 경우 초등 6학년까지 보육대상 포함*</p> <p>* 단, 초등 3학년~6학년은 예산 미지원</p>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계획 수립	완료 (’22.3월)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4	농업인 안전보험금 수급 전용계좌 도입	<p><b>기존</b> 농업인 안전보험에 따른 보험금이 일반 계좌로 입금되면 압류 금지 효력이 없어 수급권 보호 곤란</p> <p><b>개선</b> 보험금 수급 전용계좌를 도입하고 압류 금지 근거 마련</p>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시행령 개정	완료 ('22.6월)
15	농신보 재해 특례 보증한도 상향	<p><b>기존</b> 농어업 재해 복구 등을 지원하는 특례보증 한도를 3억원 이내로 제한</p> <p><b>개선</b> 특례보증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p>	농신보 농어업재해대책 자금 신용보증 업무방법서 개정	완료 ('22.9월)
16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p><b>기존</b> 식물검역신고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식물 검역 관련 대면교육 과정 이수</p> <p><b>개선</b>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을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교육시스템 구축 및 규정 정비</p>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 고시 개정	완료 ('22.11월)
17	농업ON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구축	<p><b>기존</b> 농업인이 영농에 필요한 정보, 영농일지·회계장부 작성 등 농업경영을 위한 직접적 의사소통·정보채널 부재</p> <p><b>개선</b> 농업인이 필요한 맞춤형 정보 제공, 지자체 공무원과 직접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농업 ON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구축</p>	농업ON 모바일 서비스 구축	완료 ('22.6월)
18	농촌공간 정비사업 유형별 지원규모 폐지	<p><b>기존</b>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유해시설 종류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예산별 지원항목은 제한적</p> <p><b>개선</b> 지원규모 유형 및 수목식재 사업비 제한(총사업비의 10%) 폐지</p>	농촌공간 정비사업 시행지침 개정	완료 ('22.12월)
19	농약 품목 변경등록시 시험성적서 요건 완화	<p><b>기존</b> 원제(유효성분) 외 부자재 종류, 투입 비율만 변경하여 농약 품목의 제조처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약에 등록된 모든 농작물에 대한 약효·약해 시험 성적서 제출 필수</p> <p><b>개선</b> 작물분류별 대표작물의 약효·약해 시험성적서만 제출하도록 요건 완화</p>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22.12월)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20	수입식물검역 훈증소독시 반면형 방독면 허용	<p><b>기존</b> 수입식물검역 소독 시 위해방지를 위해 방제기술자가 투약 및 개방할 때 전면형 방독면을 착용하도록 규정</p> <p><b>개선</b> 소독과정 중 가스농도 측정 시*에는 반면형 방독면 착용도 허용 * 가스농도 측정은 훈증제 투약 및 개방보다 상대적으로 위해사고 우려가 낮음</p>	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 (고시) 개정	완료 (’22.11월)
21	수입목재류 MB 훈증시 특정 기간 온도예보서 제출 면제	<p><b>기존</b> 수입목재류(원목류)의 병해충 방제를 위한 메틸브로마이드(MB) 천막훈증 시 방제 기술자는 소독기간동안 최저온도 확인을 위해 검역신청 건별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온도예보서를 첨부해야 함</p> <p><b>개선</b> 수입목재류의 메틸브로마이드 천막훈증 시 특정기간(12~2월, 7~8월) 동안 기상청 온도예보서 제출 면제</p>	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 (고시) 개정	완료 (’22.11월)
22	바이오의약품 원재료 수입시 검역 제외 조치 절차 개선	<p><b>기존</b> 바이오의약품 원재료(재조합단백질)의 경우 검역대상으로, 검역창고 입고 이후 검역이 이루어짐</p> <p><b>개선</b> 온도·빛 등 주변환경에 민감하고 변질 우려가 높은 제품 특성상 검역창고 입고 전에도 검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p>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고시) 개정	완료 (’23.1월)
23	농업인 확인서 발급 기준 완화	<p><b>기존</b> 농업인 확인기준에서 밤과 잣을 제외한 수실류의 면적기준은 1천㎡이나, 밤과 잣의 면적기준 각각 5천㎡, 1만㎡</p> <p><b>개선</b> 농업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밤나무·잣나무 면적 기준을 다른 수실류와 같이 1천㎡이상으로 통일</p>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고시) 개정	완료 (’22.7월)
24	임대형 스마트팜 거주지 자격요건 완화	<p><b>기존</b>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자격 중 거주지 요건을 임대형 스마트팜이 조성된 ‘해당 시·군’으로 제한</p> <p><b>개선</b> 거주지 요건을 ‘해당 시·도’로 확대</p>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지침 개정	완료 (’22.12월)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25	수출 농약 등록 절차 신설 및 제출서류 처리기간 단축	<p><b>기존</b> 수출농약 등록절차가 없어 수출국에서 국내 농약 등록증을 요구할 경우 국내 판매용 농약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증 발급</p> <p><b>개선</b> 수출농약 등록절차 마련 및 일부 서류 면제</p>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23.1월)
26	농약 품목 변경등록 시 시험성적서 요건 완화	<p><b>기존</b> 원제(유효성분) 외의 부자재 종류 투입 비율만 변경하여 농약 품목의 제조처방을 변경하려는 경우, 품목 변경등록 시 해당 농약에 등록된 모든 농작물에 대해 실시한 약효약해 시험성적서 필요</p> <p><b>개선</b> 모든 작물이 아닌 작물분류별 대표작물에 대한 약효·약해 시험성적서 제출</p>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23.1월)
27	농약 직권검사 사후조치 절차 완화	<p><b>기존</b> 농진청은 농약 등 또는 원제의 품질관리를 위해 매년 직권검사를 실시하며, 불합격 통보를 받은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는 불합격 모집단의 출하상황을 농진청에 보고해야 함</p> <p><b>개선</b> 불합격 농약 모집단의 출하상황 보고 의무 삭제</p>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23.1월)
28	생애 첫 농지 취득 시 자기비용 부담금 보증 지원 (최대 3억원)	<p><b>기존</b> 청년농 농지 취득 시 정책자금지원 이외 자제 조달 자금도 부담으로 작용</p> <p><b>개선</b> 농업인이 생애 첫 농지 취득 시 정책자금 이외 자부담분에 대해 농신보 운전자금 보증(최대 3억원)</p>	맞춤형농지지원 사업(공공임대용) 시행지침,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 신용보증 업무방법서 개정	완료 ('22.9월)
29	임대농지에 비닐하우스 설치 시 보증지원	<p><b>기존</b> 금융기관의 시설자금 지원은 근저당권 설정이 우선이나, 임대농지 내 시설물은 근저당권 설정 불가로 정책자금 대출이 어려움</p> <p><b>개선</b> 농지은행과 15년 이상 장기 임대 계약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이 없더라도 비닐하우스 설치 비용에 대해 농신보 보증 (최대 3억원)</p>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공공임대용) 시행지침,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 신용보증업무 방법서 개정	완료 ('22.9월)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30	영농상속공제 한도금액 상향 (20억원 → 30억원)	<p><b>기존</b> 영농 상속공제 한도 금액 20억원</p> <p><b>개선</b> 한도 금액을 30억원으로 상향</p>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기재부)	완료 (’23.1월)
31	’17~’19 직불금 1회 지급실적 삭제	<p><b>기존</b> 공익직불제 개편 당시 지급대상 농지 요건으로 기존 요건에 더하여 과거 직불금 수령실적*추가 * ’17~’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p> <p><b>개선</b> ’17~’19 농지요건 삭제</p>	공익직불법 개정	완료 (’22.10월)
32	푸드테크 계약학과 학생 선발기준 확대	<p><b>기존</b> 푸드테크 계약학과 학생 선발기준을 식품기업 또는 해당 식품분야 연계가능한 분야의 산업체 재직자로 한정</p> <p><b>개선</b> 선발기준을 식품기업 뿐만아니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비식품기업 재직자까지 허용</p>	미래혁신식품 계약학과 운영지침 개정	완료 (’22.11월)
33	외식업체 육성 자금지원사업 운영자금 대출규모 확대 등	<p><b>기존</b> 외식업체 육성자금 대출자 모집 시 업체당 운영자금 대출 상한액(5억원), 최소 대출 한도 조건(30백만원)으로 제한</p> <p><b>개선</b> 운영자금 대출 상한액 확대(30억원 → 50억원), 하한액 기준 삭제</p>	외식업체 육성자금 사업지침 개정	완료 (’22.7월)
34	시 발생 시 지자체별로 발생지역산 가금 등 반입제한 조치 개선	<p><b>기존</b> 일부 지자체에서 일관적인 기준없이 고병원성 시 발생 지역의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 시행</p> <p><b>개선</b> 중앙정부 차원의 공통된 기준 마련</p>	가금·가금산물 반입 금지 조치 개선 관련 지침 마련	완료 (’22.9월)
35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 계획 조기 확정·공고	<p><b>기존</b> 정부의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계획(차년도 연초 수립)과 일반 기업의 차년도 사업계획(10~11월말)의 수립 시기의 차이로 기업의 구체적 전략 수립에 애로사항 발생</p> <p><b>개선</b>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 계획 조기 수립·확정</p>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계획 확정· 시행	완료 (’22.12월)



## 2

## 타부처 발표 사례(농식품부 과제 일부 포함)

### 1) 2023년 행정조사 정비방안(국무조정실, '23.5월 발표)

#### 1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폐지·통합·축소 : 26건

#### 1. 유사·중복 행정조사 폐지·통합 : 18건

연번	행정조사명 (부처명)	내용	조치사항 (조치시한)
<b>1 중복·유사조사 및 실효성 없는 행정조사 폐지 (5건)</b>			
1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조사 (여가부)	<b>기존</b> 모범적 가족친화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 인증제'와 조사대상 및 지표가 유사 <b>개선</b> 가족친화수준조사는 폐지하고 가족친화 인증 심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업무 추진	가족친화법 개정 ('24.下)
2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친화조사 (여가부)	<b>기존</b>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업·공공기관 대상 보육, 기업경영, 시설환경 분야 등의 가족친화 정도를 측정하나 가족친화 인증제 등 관련 실태조사와 유사 <b>개선</b>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친화조사를 폐지하고 지자체 시설 현황, 가족친화 인증 심사 자료 등을 활용	가족친화법 개정 ('24.下)
3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점검 (해경청)	<b>기존</b>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점검 시 1)해양경찰청 지방청의 조사(서면·현장), 2)해양경찰청 본부의 조사(서면)가 이중으로 실시 <b>개선</b> 해양경찰청 본부에서 실시하는 서면심사는 폐지	수상 구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3.上)
4	지능형 로봇 투자회사 감독·검사 (산업부)	<b>기존</b>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산업부는 지능형로봇투자회사 감독·검사 권한이 있으나 법률 제정 이후 지능형 로봇투자 회사가 결성된 사례가 없음 <b>개선</b> 사문화된 조사권 폐지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 ('23.下)
5	계약학과 설치·운영 현황 등 자체점검결과 보고 (교육부)	<b>기존</b>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대학은 학과명, 재학생 및 계약체결 대상 산업체 등의 현황을 포함한 자체점검결과 보고서 등 제출 <b>개선</b> 동 행정조사를 폐지하고,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 등을 활용하여 계약학과 각종 통계 및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검토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정 ('24.下)

연번	행정조사명 (부처명)	내용	조치사항 (조치시한)
<b>② 행정조사 통합·자료 공유 (13건)</b>			
6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위한 자료 제출 (국토부)	<p><b>기존</b>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년 단위로 자료를 제출 받고 있으나 매년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 자료와 유사</p> <p><b>개선</b>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을 매년 수행되는 대중교통현황조사로 통합하여 활용</p>	대중교통현황 조사용역 과업 지시서 및 내부 방침 수정 ('23.上)
7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현황 제출 (고용부)	<p><b>기존</b> 사업주(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에게 매년 1월 말 까지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의무 부과</p> <p><b>개선</b>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시 고령자 고용현황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p>	고령자고용법 시행규칙 개정 ('22.7월)
8	직접생산 확인조사 (중기부)	<p><b>기존</b> 직접생산 위반조사를 행정기관(중기부, 조달청)별로 각각 실시</p> <p><b>개선</b> 사후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합동점검 실시, 심의위원회 운영 등 사후조사 표준화</p>	직접생산 확인 현장조사 지침 마련 완료 ('22.12월)
9	여성폭력 실태조사 (여가부)	<p><b>기존</b> 성폭력·가정폭력실태조사 모두 여성폭력과 관련이 있음 에도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실시 중</p> <p><b>개선</b> 여성폭력 관련 개별 실태조사 통합 검토 추진</p>	연구용역 추진 ('23.下)
10	성폭력 실태조사 (여가부)		
11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가부)		
12	사행산업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문체부)	<p><b>기존</b> 사행산업인 체육진흥투표권은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의 대상이나 지자체에서도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실시</p> <p><b>개선</b> 체육진흥권 판매상한액 초과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사감위-지자체 간 자료를 공유하는 등 조사 개선</p>	지자체-사감위 정보 공유 ('23.下)
13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교육부)	<p><b>기존</b> '교육시설 안전관리 현황'과 '도서·벽지 근무 교원 근무환경 실태조사'의 건축물 등 기초 정보가 유사·중복</p> <p><b>개선</b>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을 통해 기초 정보를 공유해 각 행정조사의 효율성 도모</p>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구축 ('24.上)

연번	행정조사명 (부처명)	내용	조치사항 (조치시한)
14	법규수행능력 평가 및 통합법규 준수도 평가 (관세청)	<p><b>기존</b> 수출입물류업체는 1) 통합법규준수도, 2) 법규수행능력 평가를 각각 받고 있으나 평가산식의 차이로 제도별 평가점수 차이 발생</p> <p><b>개선</b> 통합법규준수도 및 법규수행능력평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평가방식 마련</p>	통합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24.下)
15	선박용품 등 재고조사 및 항공기용품 등 재고조사 (관세청)	<p><b>기존</b> 선박용품 공급업자와 항공기용품 공급업자에 대한 재고 조사를 개별 시행</p> <p><b>개선</b> 관할 세관 내 동일 사업자의 선박용품과 항공기용품 재고관리 현장조사를 통합</p>	관할 세관 내 선박·항공기용품 공급등록 동일사업자 통합 재고조사 지침 시달 완료 ('23.2월)
16	중장기 제대군인 방위산업체 채용 현황 실태조사 (보훈처)	<p><b>기존</b> 방위산업체 직종의 취업지원실시기관을 대상으로 1) 제대군인 방위산업체 채용현황 실태조사, 2) 국가보훈 대상자 취업지원실시기관 실태조사 개별 시행</p> <p><b>개선</b>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실시기관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운영</p>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개정 ('23.7월)
17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관련 보고 및 자료제출 (국토부)	<p><b>기존</b>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대상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 대중교통법에 따른 보조금 및 융자금 행정조사를 각각 실시</p> <p><b>개선</b> 노선 버스 부분의 경우 행정조사를 통합하여 운영</p>	'23년 보조사업 추진 시 대상 지자체에 안내 ('23.上)
18	재활용의무 생산자의 제품· 포장재 출고량 관련 자료 제출 (환경부)	<p><b>기존</b>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관련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 제출 필요</p> <p><b>개선</b> 법18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개별의무 이행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에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통합하여 제출하도록 개선</p>	조사 통합 검토 ('23.下)

## 2. 공동조사 실시 : 2건

연번	행정조사명 (부처명)	내용	조치사항 (조치시한)
19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의료급여 현지 조사 공동조사 (복지부)	<p><b>기존</b> 개별법에 따라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의료급여 지급대상 기관 현지조사를 별도 실시 중</p> <p><b>개선</b>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간주규정 등 마련 또는 공동운영 방안 마련</p>	요양기관 현지 조사 지침 개정 ('23.12월)
20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행안부)	<p><b>기존</b>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실태조사·현장조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법을 우선 적용</p> <p><b>개선</b> 개별법이 없거나 범정부 대응 필요시 어린이안전의 기본법적인 기능을 하는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조사 실시</p>	필요시 관계부처 공동조사

## 3. 조사항목 축소 : 6건

연번	행정조사명 (부처명)	내용	조치사항 (조치시한)
21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실태조사 (과기정통부)	<p><b>기존</b> 실태조사 문항에 일부 불필요한 항목 포함</p> <p><b>개선</b> 불필요한 문항 2건* 삭제 * 성별 구분, 방사선 관련 교육과정 운영 현황</p>	실태조사표 수정 ('23.下)
22	원자력산업 실태조사 (과기정통부)	<p><b>기존</b> 실태조사 문항에 일부 불필요한 항목 포함</p> <p><b>개선</b> 불필요한 문항 2건* 삭제 * 평균 조업률, 적정 조업률</p>	실태조사표 수정 ('23.下)
23	특수교육 실태조사 (교육부)	<p><b>기존</b> 조사항목에 대한 통계청의 승인을 거쳐 3년마다 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p> <p><b>개선</b> 중복·유사 항목 축소 * (4월) 축소 항목 확정 → (5월) 통계청 변경 승인</p>	실태조사표 변경 ('23.6월)
24	창업기업 실태조사 (중기부)	<p><b>기존</b> 기업 일반현황을 포함하는 등 조사항목 과다</p> <p><b>개선</b>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기업 일반현황 정보(행정자료)를 활용해 조사항목 축소(5개) 및 응답자 편의 제고</p>	창업기업 실태조사표 개선 완료 ('23.2월)

연번	행정조사명 (부처명)	내용	조치사항 (조치시한)
25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중기부)	<b>기존</b> 불명확한 조사항목, 민감한 조사항목이 존재하고 중복문항 등 설문 항목이 과다 <b>개선</b> 실태조사 항목 축소 * 상인회장 설문 10문항 축소, 점포주 설문 5문항 축소	전통시장 상점가 실태조 사표 개선 완료 (’22.12월)
26	국가보훈대상자 사립대 수업료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실태조사 (보훈처)	<b>기존</b> 사립대학의 수업료 등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실태조사 위해 수강신청서 등 4종의 서류 제출 <b>개선</b> 제출서류를 4종에서 3종으로 축소 * 출퇴근부 및 근무편성표 제출 삭제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개정 완료 (’22.12월)

## 2 조사방식 개선을 통한 조사대상자 편의 제고 : 29건

### 1. 행정조사 실시 주기 및 강도 완화 : 8건

연번	행정조사명 (부처명)	내용	조치사항 (조치시한)
27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 (과기정통부)	<b>기존</b> 주파수 할당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해 변경검사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전수검사를 적용 * 변경검사와 유사한 준공검사 시에는 표본검사(10%)를 적용 <b>개선</b> 변경검사의 경우에도 표본검사 방식 채택	전파법 시행령 개정 (’22.12월)
28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 보고 (과기정통부)	<b>기존</b> 정기조사 성격임에도 수시조사로 규정 <b>개선</b>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 보고를 정기조사로 변경	실태조사표 수정 (차기 조사 즉시 적용)
29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고용부)	<b>기존</b> 사회적기업은 사업보고서 연 2회 제출 <b>개선</b> 사업보고서 제출을 연 1회로 완화	사회적기업법 개정 (’24년)
30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고용부)	<b>기존</b>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상시 50인 이상)는 1)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및 해당연도 고용계획 (~1월)과, 2) 해당연도 고용계획의 상반기 실시상황 (~7월)을 제출 필요 <b>개선</b> 제출 의무를 연 1회로 완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23.下)

연번	행정조사명 (부처명)	내용	조치사항 (조치시한)
31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조달청)	<p><b>기존</b> 창업·벤처기업 기술개발제품은 제조시설을 갖춘 기업과 협업하는 경우 직접생산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나 협업체를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적용</p> <p><b>개선</b> 유사제도(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등)를 고려하여 협업 대상기업을 '중견기업' 까지 확대</p>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정 완료 ('22.10월)
32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 실적보고 (식약처)	<p><b>기존</b> 식품·식품첨가물 제도가공업자는 매년 1월까지 전년도 생산실적 보고</p> <p><b>개선</b> 타법사례 및 식품업체 생산활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고 기한을 매년 2월까지로 연장</p>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23.1월)
33	식품 HACCP 인증평가 (식약처)	<p><b>기존</b> HACCP 인증 후 매년 정기 조사·평가를 진행함에도 인증 연장 시 현장평가 및 연장심사를 예외없이 실시</p> <p><b>개선</b> 정기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인증을 자동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p>	식품위생법 개정 ('24.12월)
34	건강기능식품 GMP 조사평가 (식약처)	<p><b>기존</b>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는 연 1회 GMP 정기조사·평가 실시</p> <p><b>개선</b> 전년도 GMP 정기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당해연도 조사·평가 면제 규정 마련</p>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23.1월 발의)

## 2. 사전통지 신설·강화 : 14건

연번	행정조사명 (부처명)	내용	조치사항 (조치시한)
35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예방 목적 자료제출 (과기정통부)	<p><b>기존</b> 수시조사의 사전통지 시점이 평균 사전 5일로 행정조사 기본법상 사전통지 기한인 7일에 미달</p> <p><b>개선</b> 사전통지 시점을 사전 10일 전으로 개선</p>	고시 전면개정 완료 ('22.3월)
36	특수교육 실태조사 (교육부)	<p><b>기존</b> 조사실시 1개월 전 공문으로 사전통지</p> <p><b>개선</b> 조사실시 1개월 전 공문 시행 및 유선 안내 병행 * '23년: (5월) 조사 안내(교원, 보호자) → (6월) 조사 실시</p>	개선 완료 ('22.12월)

연번	행정조사명 (부처명)	내용	조치사항 (조치시한)
37	수출입식물 방제 업체 점검 (농식품부)	<b>기존</b> 수출입식물방제업체 점검 시 사전통지 규정 부재 <b>개선</b> 점검 전 일시·목적·대상 등 사전통지 규정 신설	농약관리법 개정 완료 (’23.1월)
38	친환경안전축산 직불제 이행점검 조사 (농식품부)	<b>기존</b> 이행점검 업무 시 사전통지 규정 부재 <b>개선</b> 점검 전 일시·목적·대상 등 사전통지 규정 신설	농업농촌공익 직불법시행령 개정 (’23.12월)
39	경관보전직불제 이행점검 조사 (농식품부)	<b>기존</b> 이행점검 업무 시 사전통지 규정 부재 <b>개선</b> 점검 전 일시·목적·대상 등 사전통지 규정 신설	농업농촌공익 직불법시행령 개정 (’23.12월)
40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 이행점검 조사 (농식품부)	<b>기존</b> 이행점검 업무 시 사전통지 규정 부재 <b>개선</b> 점검 전 일시·목적·대상 등 사전통지 규정 신설	농업농촌공익 직불법시행령 개정 (’23.12월)
41	식물검역대상 물품 저장소 검역 (농식품부)	<b>기존</b> 식물검역대상물품 저장소 점검 시 사전통지 규정 부재 <b>개선</b> 점검 전 일시·목적·대상 등 사전통지 규정 신설	저장소의 검역 및 식물검역 전용구역 기준 등(고시) 개정 (’23.6월)
42	공인노무사회 지도·감독 (고용부)	<b>기존</b>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 조사시 사전통지 규정 부재 <b>개선</b> 공인노무사법에 사전통지 규정 마련	공인노무사법 개정 (’23.下)
43	수상레저시설 안전점검 (해경청)	<b>기존</b> 수상레저시설 안전점검 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부재 <b>개선</b> 해경서장, 시군구청장이 안전점검 시 대상시설, 목적, 날짜 등을 피검자에게 미리 사전통지하도록 안전점검 절차 개선	수상레저 안전법 시행령 개정 (’23.6월)
44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세관장의 업무감독 (관세청)	<b>기존</b> 사전통지, 조사 연기신청, 조사결과의 통지 규정 부재 <b>개선</b> 행정조사기본법 상 사전통지, 연기 신청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 신설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완료 (’22.12월)

연번	행정조사명 (부처명)	내용	조치사항 (조치시한)
45	혈액관리 업무 검사 (복지부)	<b>기존</b> 사전통지 시기가 '방문조사 전'으로 규정 <b>개선</b> 사전통지 시기를 '방문조사 7일 전'으로 명확화	행정조사별 세부 운영 계획 변경 완료 ('22.11월)
46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보고 및 검사 (복지부)	<b>기존</b> 사전통지 관련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b>개선</b> 사전통지를 '방문조사 7일 전'에 하도록 지침에 마련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편람 개정 ('24.6월)
47	장애인 복지시설 실태조사 (복지부)	<b>기존</b> 사전통지 관련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b>개선</b> 시·군·구에 조사대상 기관에 대한 7일 전 조사 관련 사항 서면통보 의무 부과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지침) 개정 완료 ('23.2월)
4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 (복지부)	<b>기존</b> 조사 관련 사전안내 미흡 <b>개선</b>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7일 전 안내로 명확화	편의시설 실태 전수 조사 지침 개정 완료 ('23.4월)

### 3. 정보통신망 활용 등 조사방식 개선 : 4건

연번	행정조사명 (부처명)	내용	조치사항 (조치시한)
49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료제출 (과기정통부)	<b>기존</b> 기본 자료제출 방식이 서면제출로 불편 야기 <b>개선</b> 정보통신망을 우선 활용해 제출하도록 변경	내부지침 개선 (즉시 적용)
50	선형교육 출제 점검 (교육부)	<b>기존</b> 학교는 평가문항 자료를 관할 교육청에 서면 제출 <b>개선</b> 시·도별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개선 지원하고 평가문항 자료제출 방식을 전산화한 시·도 우수사례 공유	시·도별 자료 제출 시스템 구축 ('24.6월)
51	동물실험시설 등 지도·감독 (식약처)	<b>기존</b> 동물실험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현장조사로 한정 <b>개선</b> 코로나 등 현장조사가 제한될 경우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활용한 비대면조사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 ('21.9월 발의)



연번	행정조사명 (부처명)	내용	조치사항 (조치시한)
52	소모성자재납품업 실태조사 (중기부)	<p><b>기존</b> 실태조사 시 조사개요, 항목 등에 대한 조사원 설명 미흡</p> <p><b>개선</b> 실태조사 시 관련 조사원 교육 실시 및 조사지침 보완 * (교육확대) 연 1회('20년) → 연 3회로 확대('22년) (지침보완) 지침서 오류 및 질의응답 사례 보완</p>	조사자 교육 및 소모성자재 납품업 실태 조사지침서 개선 완료 ('22.11월)

#### 4. 지자체용 행정조사 지침 마련·배포 : 3건

연번	행정조사명 (부처명)	내용	조치사항 (조치시한)
53	장사시설 등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출입 검사 (복지부)	<p><b>기존</b> 지자체별 공동묘지 정비 인식, 토지활용, 주민 필요시설 등에 대한 방안 등이 상이</p> <p><b>개선</b> 2023-2027 제3차 지역수급 계획수립 지침 완료</p>	제3차 지역수급 계획수립 지침 완료 ('23.1월 완료)
54	옥외광고업자 영업실태 조사 (행안부)	<p><b>기존</b> 영업실태 조사의 주기, 내용, 사전통지 등 지자체 가이드 라인 미비</p> <p><b>개선</b> 지자체 가이드라인 수립</p>	지침 마련 ('23.下)
55	관광진흥 시책 수립 등 관련 보고·검사 (문체부)	<p><b>기존</b> 지자체 대상 업무편람, 가이드라인 내 행정조사 관련 내용 및 지침 부재</p> <p><b>개선</b> 지자체 대상 업무편람, 가이드라인* 개선(관광진흥법상 행정조사 관련 내용 보완) * 여행업,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야영장업 등</p>	지자체용 업무편람, 가이드라인 개선 ('23.下~)

### 3 행정조사 법정주의 확립 : 16건

#### 1. 행정조사 실시 근거 및 방법·절차 규정 마련 : 6건

연번	행정조사명 (부처명)	내용	조치사항 (조치시한)
56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국토부)	<p><b>기존</b> 개발제한구역법 불법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조사에 대한 명시적 근거 부재</p> <p><b>개선</b>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 등 출입·조사의 근거 규정 마련</p>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23.12월)
57	요양기관 현지조사 (복지부)	<p><b>기존</b> 건강보험법상 현지조사에 대한 위임·위탁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위임·위탁하는 것에 대한 현장의 문제제기로 위임·위탁하지 않고 있음</p> <p><b>개선</b> 현 건강보험법상 위임·위탁 규정은 삭제하고 업무지원 근거 신설</p>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3.下)
58	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복지부)	<p><b>기존</b> 의료급여법 하위법령인 의료급여법 시행령에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업무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p> <p><b>개선</b> 의료급여법에 심평원 등에 대한 업무지원 근거를 마련</p>	의료급여법 개정 ('23.下)
59	어린이 안전사고 현장조사 (행안부)	<p><b>기존</b> 어린이안전법에서 현장조사 방법·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였음에도 현재 시행령에 관련 사항 규정하지 않고 있음</p> <p><b>개선</b> 어린이안전법에서 위임한 현장조사 방법·절차 등 사항을 同 시행령에 규정</p>	어린이안전법 시행령 개정 ('24년)
60	건설엔지니어링 협회 지도·감독 (국토부)	<p><b>기존</b> 국토부장관이 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p> <p><b>개선</b> 국토부장관의 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대한 권한행사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p> <p>* 건설기술진흥법의 위반여부 확인 및 민원발생, 같은 법에 따른 신고·관리·운영의 적정수행이 필요한 경우 등</p>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23.下)

연번	행정조사명 (부처명)	내용	조치사항 (조치시한)
61	방송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위반여부 조사 (방통위)	<p><b>기존</b> 금지행위 규정은 있으나 현장조사에 대한 근거법령이 부재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에 한계</p> <p><b>개선</b> 금지행위 위반여부 확인 위한 현장조사권을 신설하여 금지행위 조사의 실효성 확보</p>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연구용역 실시 (’24년)

## 2. 위임·위탁 행정조사의 근거규정 완비 : 10건

연번	행정조사명 (부처명)	내용	조치사항 (조치시한)
62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여가부)	<p><b>기존</b> 외부 전문기관 등 실태조사 수행주체에 대한 명확한 위임 규정 미비</p> <p><b>개선</b> 외부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이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 마련</p>	여성의 경제 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3.下)
6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여가부)	<p><b>기존</b> 외부 전문기관 등 실태조사 수행주체에 대한 명확한 위임 규정 미비</p> <p><b>개선</b> 외부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이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 마련</p>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3.下)
64	가족 실태조사 (여가부)	<p><b>기존</b> 외부 전문기관 등 실태조사 수행주체에 대한 명확한 위임 규정 미비</p> <p><b>개선</b> 외부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이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 마련</p>	건강가정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23.下)
65	의약품등· 의약외품 생산 및 수출·수입실적 (식약처)	<p><b>기존</b> 의약품·의약외품 업체에서 생산·수입실적 등을 한국 제약바이오협회 등 사단법인을 통해 보고하고 있으나 법령상 구체적인 위탁 근거 미비</p> <p><b>개선</b> 의약품·의약외품의 생산·수입실적 보고 위탁 근거 마련</p>	약사법 시행령 개정 (’23.下)
66	수산종자생산업 실태조사 (해수부)	<p><b>기존</b> 수산종자산업 실태조사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 하였으나 인력부족으로 인해 ’21년부터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수행 중</p> <p><b>개선</b>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위탁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p>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 (’23.下)

연번	행정조사명 (부처명)	내용	조치사항 (조치시한)
67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부)	<b>기존</b>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대한 위임·위탁 근거규정 미비 <b>개선</b>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위임·위탁 근거 마련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 (*24.上)
68	불법개설 의심 약국 행정조사 (복지부)	<b>기존</b> 불법개설 의심약국에 대한 관계기관·단체의 조사업무 위임 규정 미비 <b>개선</b> 관계기관·단체에 조사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약사법 개정 (*23.12월)
69	종자산업 실태조사 (농식품부)	<b>기존</b>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는 국립종자원장이 위임받아 수행, 현장 면담조사 등 일부 조사업무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위임규정 미비 <b>개선</b>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줄 수 있는 위임근거 규정 마련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 (*23.12월)
70	친환경적 산업 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산업부)	<b>기존</b> 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 대한 위탁 근거 미비 <b>개선</b> 조사 주체(한국디자인진흥원)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	산업디자인 진흥법 시행령 개정 (*23.下)
71	문화산업 전문회사의 감독·검사 (문체부)	<b>기존</b>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감독·검사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하나 법적 근거 미비 <b>개선</b>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근거를 법에 명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 (*23.下)

#### 4 행정조사 불응 등에 대한 과도한 제재 정비 : 6건

##### ❖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 전환 : 6건

연번	행정조사명 (부처명)	내용	조치사항 (조치시한)
72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검사 (기재부)	<b>기존</b> 물가안정법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b>개선</b> 경제형벌 규정을 행정제재(과태료)로 전환	물가안정법 개정 (*23.下)

연번	행정조사업명 (부처명)	내용	조치사항 (조치시한)
73	광해방지사업 시설 등에 관한 보고 및 검사 (산업부)	<p><b>기존</b> 광산피해방지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p> <p><b>개선</b> 경제형벌 규정을 행정제재(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p>	광산피해 방지법 시행령 개정 (’23.下)
74	특정물질 관리 등에 관한 보고 및 조사 (산업부)	<p><b>기존</b>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고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p> <p><b>개선</b> 경제형벌 규정을 행정제재(과태료)로 전환</p>	행정제재 전환을 위한 계획 수립 추진 (’23년)
75	항만협회 감독을 위한 보고 및 자료 제출 (해수부)	<p><b>기존</b> 항만법에 따라 거짓으로 보고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p> <p><b>개선</b> 경제형벌 규정을 행정제재(과태료)로 전환</p>	항만법 개정 (’23.下~)
76	선박소유자 등 보고·자료 제출 (해수부)	<p><b>기존</b> 선박안전법에 따라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였거나 공무원의 출입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p> <p><b>개선</b> 경제형벌 규정을 행정제재(과태료)로 전환</p>	선박안전법 개정 (’23.下~)
77	동물실험시설 등 지도·감독 (식약처)	<p><b>기존</b>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2백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p> <p><b>개선</b> 자료요구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경제형벌 규정을 행정제재(과태료)로 전환</p>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 (’23.下~)

## 2)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국무조정실, '23.6월 발표)

① 태양광 모듈을 최적의 발전효율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일조면 방향 기준 제한을 완화합니다.

**현황** 태양광발전 모듈을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을 정남향 등 특정 방향으로 제한\*하고 있어, 남쪽으로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서는 모듈 설치 불가

\* 정남향 원칙, 정남향이 불가능한 경우 정남향 기준 동쪽 또는 서쪽 방향 45도 이내로 제한

**개선** 최적의 발전효율을 낼 수 있는 방향이면 동·서향으로도 모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일조면 방향 기준 단계적 개선(폐지, 완화)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개정, ~'23.12

② 중대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우수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처리 대상을 확대합니다.

**현황** 암 등 중대 질환에 대해 기존 치료제 대비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이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치료제를 개발하여도 대체치료제가 있다고 보아 허가·심사 신속처리 대상 지정 불가

\* 살아있는 세포, 조직 또는 유전자를 원료로 제조한 바이오의약품으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등이 해당

**개선** 신규 치료제가 기존 대비 현저한 개선 효과를 보일 시 '대체치료제가 없는 경우'에 포함, 신속처리 가능하도록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개정, ~'23.12

③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신청 시 간소화된 허가 절차를 적용받는 동일 자율주행차 인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현황** 이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와 동일한 시스템이 탑재된 동일 차종 차량은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주나, 센서 등 일부 부품을 교체해 성능이 개선된 차량은 '동일 자율주행차'가 아니라고 보아 모든 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

\* 구조·기능 설명서 등 일부 서류를 제출 면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시험운행을 생략

**개선**

성능저하 없이 동등하거나 개선된 사양의 장치·부품 장착 시 동일 자율차로 인정하여 시험운행 등 절차를 면제하고 최소한의 서류 검사만 실시

☞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 운행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3.10

**④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유예 신청 시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과정에서 제출된 임상자료를 인정해주는 대상을 확대합니다.**

**현황**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유예기간이 2년에 불과해 평가 시 제출할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움

\*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 중 안전성 우려가 없다고 판단 되는 의료기술의 임상의료현장 도입을 일시 허용하는 제도

**개선**

유예기간 한도를 연장\*하고, 식약처 허가 시 제출된 임상시험 자료를 유예 신청 시 임상근거 서류로 인정하는 비침습 의료기술의 범위를 확대\*\*

\* 1회(2년) 한정 → 조건 충족 시 1회 연장 / \*\* 비침습 진단검사 →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

☞ 보건복지부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24.6

**⑤ 대전광역시의 비행금지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현황**

대전시 공역 대부분(장태산·만인산 인근 제외)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드론 상용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애로 발생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는 그 출력이 일반 원전의 1/100에 불과하며, 연구 등 목적으로만 가동됨에도 일반 원전과 같은 크기의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됨

**개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티드론시스템 실증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전시 비행 금지구역을 완화

\* 1회(2년) 한정 → 조건 충족 시 1회 연장 / \*\* 비침습 진단검사 →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

☞ 국토교통부 / 「항공정보간행물(AIP)」 개정안 발간, ~'24.6

## ⑥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조달 시 상용소프트웨어의 직접구매를 유도하여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의 제값 받기를 촉진합니다.

**현황** 공공기관이 SW 조달사업에 포함된 중소기업의 상용SW\*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조달청장 등의 별도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용SW 중 50%만 직접 구매하면 검토를 면제받을 수 있어 **직접구매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통합발주에 따라 하도급**을 받게 된 SW기업들은 **과도한 단가 인하**에 직면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포에 등록된 상용SW 또는 품질인증(GS 등)을 받은 5천만원 이상의 상용SW

**개선** 상용SW 조달 시 **중소 상용SW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비율이 60% 미만인 경우 조달청장 등의 별도 검토**를 받도록 **비율 규정**을 개편하여 **SW 직접구매**를 유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개정, '23.5  
기초치

## 3)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개선 사례(국무조정실, '23.6월 발표)

### ①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내 중소 제조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도 할 수 있게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부대시설로 허용하여 중기 경영애로를 해소합니다.

**기존**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중소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설치·시공 등을 위한 일체의 '전문건설업' 입주 불가(산업시설구역내 전문건설업 운영 불가)  
※ 건설업 영위를 위한 별도 사무실 설치 등 추가비용 발생과 발주처의 건설업 면허요구 시 즉각 대응 어려움으로 입찰·수주 무산 등 경영애로

**개선**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한 중소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건설업'을 부대시설로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산업시설구역내 전문건설업 운영 허용)**

※ 전국 산업단지(약 13백개) 기업현황('23년) : 약 12만개

☞ 산업부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 ~'23.11



## ② 가정폭력 피해아동 본인만 신청 가능한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 권한을 지자체장에게도 부여,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추가폭력 노출을 방지합니다.

**기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명서, 가정폭력 소명서류, 신청서 작성 제출 필요  
- 피해자가 영유아인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

**개선**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실시한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

☞ 행안부 / 「주민등록법」 개정, ~'24.6

## ③ 독서실 열람실 남녀좌석 구분규제를 폐지하여 사업자가 좌석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개선합니다.

**기존** 9개 광역단체\*는 조례\*\*를 통해 '독서실 열람실 남녀좌석 구분' 운영 중

\* 부산, 울산, 광주, 경남, 경북, 전북, 전남, 강원, 제주

\*\* 각 지자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전국 독서실 현황( 22년) : 약 4천개

**개선** 독서실 열람실 남녀좌석 구분규제 폐지(전국단위 일제 정비)

☞ 부산 등 9개 지자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23.12

## ④ 대형공원 건축물 높이 제한(4층, 16m 이하) 완화로 랜드마크 설치 등 지역관광 명소로 조성합니다.

**기존** 공원 내 건축물은 높이 4층(16m) 이하만 가능

**개선** 대형공원(면적 10만㎡ 이상 근린공원) 내 특정 공원시설\* 높이 제한 폐지

\* 공원시설 중 온실(교양시설), 전망대(편익시설) 등

☞ 국토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4.6

## ⑤ 전기저장장치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촉진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합니다.

**기존** 환경영향이 적은 발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태양력·풍력 발전소 설치사업과 전기저장장치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상이

\* (태양력·풍력 발전소) 발전시설용량 10만 kW 이상 / (전기저장장치) 발전시설용량 1만 kW 이상

**개선** 전기저장장치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태양력·풍력 발전소 설치사업 수준으로 완화(발전시설용량 1만 kW 이상 → 10만 kW 이상)

☞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24.2

## ⑥ 재해 위험이 없는 산지전용의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을 면제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기존** 산지전용(임야 → 전, 대, 공장 등 지목변경) 면적 660㎡ 이상인 경우 산림재해 예방 목적으로 산림기술자가 작성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필요

**개선** 산지전용에 따른 산림재해 위험이 없는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건당 500~1,000만원, 45일 이상 소요) 제출 면제

\* 주변이 평탄한 지형으로 붕괴나 토사유출 위험 또는 형질변경이 없는 산지전용 등

※ 산지전용 현황('22년) : (허가) 약 2만3천건 (면적) 약 63Km<sup>2</sup>(여의도 면적 19배)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3.7

## ⑦ 법인 주소변경 시 법인 자동차등록증 주소 자동 변경으로 신청 불편을 해소합니다.

**기존** 법인 이전 시 법인 주소변경(법원)과 법인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지자체) 각각 필요

※ 현재, 개인은 주소변경 시 전산 연계로 자동차등록증 주소 자동 변경 가능

**개선** 법인 주소변경 시 자동차등록증 주소 자동 변경

※ 법인 자동차 현황('21년) : 약 95만대(전체 9%)

☞ 국토부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법원등기시스템 연계, ~'24.12

## ⑧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세부업종 간판 표시 규제를 폐지하여 자영업자의 현장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기존** 일반음식점 등 자영업 식품접객업에 경우, 간판상에 업소명과 함께 세부업종\* 표기가 필요

\* (세부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개선** 자영업 식품접객업소\*의 간판에 세부업종 의무 표시 폐지

\* 전국 식품접객업소 현황('21년) : 약 94만개소

☞ 식약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4.3.